

韓·美 두나라 會計基準의 比較分析



I. 序 論

1. 本研究의 意義

우리나라에서 「企業會計原則」을 처음 成文化한 것이 1958년이니 會計가 하나의 社會的 制度로서 일반에게 널리 普及되기 시작한지 20餘年的 時間이 경과하였다.

當時에 制定된 우리나라 「企業會計原則」은 1949年 日本의 企業會計審議委員會가 成案한 企業會計原則을 기초로 하여 마련한 것이나, 日本의 企業會計原則의 原型을 이루고 있는 것이 美國의 T.H. Sanders, H.R. Hatfield 및 U. Moore의 共同研究結果인 「會計原則에 관한 報告書」(A Statement of Accounting Principles)라고 할 때, 우리나라의 「企業會計原則」과 美國의 會計原則은 純粹·간접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美國에 있어서의 會計原則은 그후에 많은 學者와 研究機關에 의하여 多樣한 意味와 内容을 갖는 것으로 變化·發展하였다. 美國에서의 會計原則의 變化·發展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企業會計原則」이 成文化된 이래 20年에 가까운 期間 아무런 進前을 보지 못하고 오로지 落後된 企業會計制度를 一般에게 普及하는데 教導的 役割 이상의 機能밖에 수행하지는 못하였다. 1976年에는 우리나라 經濟與件의 变化에 따

李 正 浩
(서울大 經營大 教授)

라 「企業會計原則」에 部分的인 손질을 하여 會計原則이 改正된 것으로 發表하고 있으나, 이것 역시 會計의 發展추세에 비추어 볼 때 滿足할 만한 것이 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면 과연 美國에 있어서의 會計原則의 水準은 어느 段階에까지 와 있고 그것과 比較해 볼 경우의 우리나라의 會計原則의 水準은 어떤 위치에 머물고 있는가?

한 國家의 會計原則은 具體的으로는 會計가 수행되는 法制上의 制約條件, 經濟發展段階, 貨幣價值變動의 程度, 國民感情과 思考의 水準, 그리고 會計傳統 등 여러 原因에서 많은 差異를 나타낸다. 따라서 外形的으로 表示되는 會計原則의 内容 그 自體만을 比較하는 것으로서 그 國家의 會計原則의 發展程度를 判斷할 수는 없다.

그런데 近年에 와서 世界的 傾向으로 發展하고 있는 國際去來 및 國際投資의 增加와 國際企業이 출현함에 따라, 지금까지는 한 國家 안에서만 작성되고 利用되었던 會計情報가 國際的으로 활용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 같은 時點에서 지금까지 自由世界의 會計實務를 지도해 왔던 美國의 會計理論 및 會計原則의 추이는 그밖의 여러 國家에서 會計의 方向을 決定하는데 중요한 影響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 「企業會計原則」의 成立背景이나 内容 그리고 經濟關係를 미루어 볼 때 美國의 影響力은 앞으로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점에서 現在

* 本研究는 產學協同財團研究費에 의한 것임.

의 狀況下에서 韓美間의 會計原則의 相違點을 比較分析한다는 것은 意義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2. 研究方法

韓美間의 會計基準을 比較分析하는 데는 여러 가지 方法이 있을 수 있다. 兩國家의 會計基準을 設定하는 方法論으로부터 출발하여 會計基準의 體系·內容·意義 등을 比較分析할 수도 있고, 또한 이들 會計基準이 具體的으로 報告書에 反映되는 측면을 分析하여 兩國間에 會計가 이 루어지는 差異點을 찾아내어 각각의 意味·內容을 分析할 수도 있다. 또한 韓美間의 會計原則이 歷史的 背景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會計에 影響을 미치는 社會的·文化的 背景을 分析하는 方法으로 會計基準의 变遷 및 内容을 分析할 수도 있다. 그러나 本研究에서는 基本的으로 다음의 두가지 側面에서 韓國과 美國에 있어서의 會計基準이 갖는 差異點을 分析하는데 努力하였다.

첫째는 韓國과 美國은 각각 會計基準을 마련하는 歷史的 背景을 달리하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會計基準의 體系 및 内容上에 差異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각각의 會計基準이 企業社會에 寄與하리라 기대하는 면이 다르게 反映되고 있다는 점을 分析하였다.

둘째는 會計基準이 결과적으로 會計行爲에 반영되어 會計情報에 具體的으로 나타나는 면을 會計報告書(財務諸表)를 중심으로 分析하였다. 그것은 會計報告書가 會計基準에 따라 작성되므로 會計報告書를 分析하는 것은 복잡한 會計의 個別問題를 單純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美國 Allegheny Ludlum Industries 會社의 1975年度 決算報告書를 分析資料로 삼았다. 또한 會計基準의 歷史的 背景을 比較하기 위하여 그간 美國의 學界 및 實務界에서 發表한 諸報告書를 기초로 하였다.

3. 用語의 定義

會計에서 「基準」 또는 「原則」이란 用語가 갖는 多樣한 의미로 말미암아 많은 混亂이 나타나고 있다. 本研究에서 會計基準 또는 會計原則이란 말은 會計行爲를 수행할 때 會計擔當者가 준수하

는 會計行爲의 指針이란 뜻으로서 사용하였다. 따라서 이 말은 會計基準·會計原則·會計規則·會計節次·會計方法·會計政策·會計慣習 등 會計行爲를 指導하는 規範을 광범위하게 포괄하고 있는 用語로서 이들 用語와 별다른 구별없이 사용하였다. 다만 會計關係의 報告書에 나타난 바에 따라 可能한 한 用語를 번역하여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II. 會計原則의 生成과 發展

1. 美國에 있어서 會計原則의 發展過程

美國에 있어서 會計原則을 成文化하려는 努力은 美國公認會計士會(AICPA)와 美國會計學會(AAA)를 중심으로 서로 相異한 接근방법으로 이루어졌다.

會計原則을 集大成하려는 최초의 努力은 1932年 George O. May가 美國會計士會의 會長職을 맡고 있을 당시 美國會計士會 株式去來所協力特別委員會(American Institute's Special Committee on Co-operation with Stock Exchange)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뉴욕 株式去來所(New York Stock Exchange)는 株式을 當該證券去來所에 上場시키고 있는 會社들이 當時에 採擇하고 있던 會計方法과 報告方法이 多樣하여 이것이 초래할 惡影響에 대하여 憂慮를 表明하였던 것이다. 한편 美國會計士會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監查證明書의 정확한 用語法과 會計士에게 賦課한 責任도 애매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이리하여 當委員會는 證券去來所의 上場規程을 통하여 強制할 수 있는 會計原則을 體系化하는 任務를 委任받았다. 이와 같이 하여 美國公認會計士會의 證券去來所協力 特別委員會에서 1932年에 뉴욕 株式去來所 上場委員會에 보낸書信 속에 당시에 중요시되었던 會計行爲의 指針으로서 實現主義, 資本剩餘金, 利益剩餘金, 自己株式 및 會社內部 利害關係者 債權의 記載方法 등 5 가지의 原則을 提示하였던 것이다. 이것이 갖는 중요성은 그 内容이 아니라 會計原則을 成文化하려는 努力의 發露라는 점에 있다. 그후 美國公認會計士會에서는 會計諸原則을 明文化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같은 動向과 거의 때를 같이하여 美國會計學會에서는 1936年에 A Tentative Statement of Accounting Principles Underlying Corporate Financial Statements를 公刊하였다. 이곳에서 20個項目에 달하는 諸原則을 表明하고 있다. 대략 그內容을 보면 特定의 計定科目에 대한 定義, 財務諸表의 樣式과 資產의 帳簿價額 및 을바른 減價償却의 處理에 관한 提示, 納入資本과 利益剩餘金의 區分, 經常利益과 臨時利益의 區分, 그리고 그밖의 會計上 亂用이 생기기 쉬운 分野에 대한 바람직한 會計方法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곳에 나타난 會計原則은 會計行爲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基本的인 方向을 제시한 原則이라고 하기보다는, 오늘날 일반적으로 구별해서 쓰이고 있는 原則과 規則의 混合物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會計上 諸概念에 관한 包括的인 報告書로서 本 報告書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의 重大한 短點을 가지고 있다. 그 하나는 위에서 指摘한 대로 廣範해야 할 諸原則이 節次上의 規則(rule)과 混合되어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論理上이나 또는 實務上으로 어떤 한쪽 側面에서는 推論을 할 수 있는 根據를 갖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다.

비록 會計關係機關의 이름으로 發表된 것은 아니나 우리가 認定할 수 있는 原則을 當當時에 최초로 集大成한 것은 1937年の 美國會計士會創立週 50年 紀念懸賞論文募集시에 第1位로 當選한 Gilbert R. Byrne의 論文 To What Extent Can the Practice of Accounting Be Reduced to Rules and Standards?이다. 이곳에서 그는 8個項目에 달하는 會計原則을 例示的으로 들어 歷史的 原價에 의한 評價, 費用·收益의 爭衡한 對應, 減價償却의 採用, 販賣時點에서의 實現, 保守主義, 納入資本과 利益剩餘金의 區分, 會計에 있어서 繼續性原則의 필요성 등을 強調하고 있다.

1938年에는 Haskins and Sells Foundation이 “會社會計 및 一般大衆에 配布하는 財務報告書의 解釋과 改善에 유용한 會計原則을 公式化할 것을 T.H. Sanders, H.R. Hatfield 그리고 U.Moore의 3 教育者에 委任하여 그 結果로서 A Statement of Accounting Principles가 作成되었다. 이 報告書를 作成하는데 있어서 그들은 會計資料의 作

成者와 利用者 雙方과 會見하고 定期刊行文獻을 再檢討하였으며, 또한 法律, 法廷判決, 當時の 會社報告書 등을 음미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實證的方法으로서 實際의 經驗과 生存해 있는 人間의 具體的 意見을 綜合하여 當時に 적용되고 있던 Doctrine의 目錄을 作成하였던 것이다.

이곳에서 強調하고 있는 주요한 점을 要約하면 大略 다음과 같다. (1) 資本去來와 損益去來를 엄격하게 區別할 것. (2) 會計節次를 繼續의 으로 적용할 것. (3) 會計上의 判斷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諸項目에 대해서는 保守主義에 따를 것. (4) 利益에 대해서는 當期業績主義의 概念을 적용할 것. (5) 流動資產의 評價는 低價基準을 적용할 것. (6) 移延費用을 報告함에 있어서 將來期間의 效益에 負擔시키는 費用과 實際로 나타난 損失과의 區別에 대해서는 特別히 注意할 것 등으로 되어 있다.

Sanders, Hatfield 및 Moore의 會計原則은 그들이 改善하려는 會計方法으로부터 귀납적으로導出하였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릇된 會計實務라 하더라도 그것이 廣範圍하게 사용되는 한 許容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會計士로 하여금 本質的으로 受動的인 役割을 賦與한 결과가 되었다. 會計專門職이 그의 獨立性을 認定받으려고 努力하던 當當時에 그들은 財務諸表에 包含되어야 할 資料와 그의 表示方法에 관한 決定은 經營者의 任務라고 主張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여러가지 점에서 缺點이 있더라도 이 研究結果는 Reed K. Storey가 말한대로 “會計原則에 관한 최초의 어느 程度 完全한 報告書”임에는 틀림없다. 이같은 점에서 이것은 그후의 會計原則의 研究에 많은 影響을 주었다.

1930年代 後半期에 이르기까지 會計原則을 成文化하려는 過程에서 나타난 公通적인 短點은 會計와 關係된 基本用語에 대한 統一的 理解를 결여하고 있었던 것이다. 예를 들면 著者에 따라서는 Principle, Doctrine, Convention, Rule 등의 用語를 자유로이 騰使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이들을 同義語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會計諸則의 段階를 区別하기가 심히 곤란한 경우도 있었다. 이점을 중시하여 1939年 Stephen Gilman은 그의 著書 Accounting Concepts of Profit에서 會計原則을

集大成하는데 사용되는 用語를 嚴密하게 定義하려고 試圖하였다. 그는 會計思考의 段階를 4區分하고 종래에 原則으로 불리우던 概念을 再分類한 바 있다.

S. Gilman은 會計理論의 基礎가 되는 基本的假定을 Convention(慣習)이라고 하고 그例로서 4개의 Conventions을 들고 있다. 實體의 Convention, 評價의 Convention, 會計期間의 Convention, 借邊·貸邊의 Convention 등이 그것이다. Doctrine은 信念에 관한 것 또는 政策의 問題로서 適用된 會計實務이다. 예를 들면 保守主義, 繼續性, 公開性 및 重要性 등은 그 모두가 論理의인 면에서 타당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便宜의인 면에서 正當化시켜 會計報告에 적용된 Doctrine인 것이다. Rule(規則)은 “行爲 또는 行動을 위해서 規定된 指針”으로서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意味를 갖는다. Principle(原則)은 自然科學에 있어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Rule이 導出되는 基本的 真理이다. 原則은 法律의 改正, 法廷의 判決 또는 政府機關의 規制 등을 無視한다고 하는 意味에서 Doctrine이나 Convention과는 다르다. Principle은 產業間에 다를 수도 없고 또한 企業의 所有形態의 변화에 따라서 影響도 받지 않는다. 따라서 Gilman은 真正한 意味에서의 會計原則은 存在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와 같이 Gilman은 會計上의 用語를一般的의 用語와 그 使用法을 일치시킴으로서 現在 우리가 사용하는 用語보다도 더 正確한 分析을 하였던 것이다.

會計의 基礎概念에 관한 세심한 檢討는 그 뒤에도 A.C. Littleton에 의해서도 이루어 졌으며, 그의 具體的 표현은 1940年에 W.A. Paton과 A.C. Littleton이 共著로 出版한 *An Introduction to Corporate Accounting Standards*에 反映되었다. 이 두 著者는 1936年에 美國會計學會에서 發表한 *A Tentative Statement of Accounting Principles Underlying Corporate Financial Statement*의 常任委員會 멤버이었다. Paton과 Littleton은 그들의 著書를 통해서 *A Tentative Statement*의 基調가 되는 基本的 會計理論을 명백히 하려고 試圖하였던 것이다. 이 著書는 當時에 나타난 原則에 관한 가장 體系의 會計報告書로

서 이것은 原價主義에 의한 會計理論의 가장 優秀한 解說書이다. 이곳에서 취하고 있는 會計理論은 實務로부터 歸納하여 體系化시킨 것이 아니라 주로 演繹的으로 展開하여 會計理論을 集大成한 것이다. 이것은 또한 종전의 報告書보다도 高度의 水準으로 理論을 強調하고 諸概念에 대한 實施上의 法則을 下位에 두고 있다. 그러므로 傳統的 會計實務로부터 존중시되어 오던 保守主義나 低價主義와 같은 Doctrine은 支持하지 않했을 뿐 아니라 論議조차도 하지 않고 있다.

여하튼 會計原則을 成文化하려는 努力이 시작된 것은 1930年代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30年代의 成文化된 原則은 심한 批判을 피할 수가 없었다.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發達된 會計理論의 基礎는 1930年代의 10年間에 이루어진 研究努力에 크게 힘입고 있다. 이 時代에 美國會計士會와 美國會計學會는 다같이 會計原則을 發表하기 위하여 獨自의 機關을 形成하고, 財務會計를 費用과 收益의 對應에 基礎하여 原價配分의 過程이라는 基本的 形態로 認識하기 시작한 것도 이 시기에 이루어진 것이다. 1930年代末에 展開된 會計原則의 概念은 오늘날까지도 會計思考에 支配의 影響을 미치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用語인 “一般的으로 認定된 會計原則”이란 말은 美國公認會計士會가 公表한 會計原則과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發達되어온 用語이다. 1939年부터 1959年에 걸친 20年 동안에 美國會計士會의 會計節次委員會는 51通의 *Accounting Research Bulletins*를 公刊하였다. 이들 公報는 財務會計에 관한 거의 모든 면을 網羅하여 實務를 指導하고 改革하기 위한 手段으로 활용되었다. 公報로서 公表되려면 21名의 委員中 2/3의贊成을 얻어야만 했던 이의 影響力은 會計實務者와 顧客으로부터 一般的的 承認을 받느냐 아니면 받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 公報의 普及性이 极히 重要的 問題였다. 公報는 會計上의 特定問題가 發生하였을 때 그 問題에 대해서 會計擔當者가 취하여야 할 複數의 解決方法을 建告하는 形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각각의 公報는 公報相互間に 首尾一貫된 問題解決方法을 提示하지 못하였다.

美國會計學會가 會計原則을 制定하는데 있어서 나타난 또 다른 하나의 短點은 豐想되는 顧客의 反發에 重大한 影響을 미치는 決定을 排除하는 경향이 있었고 論議가 많은 問題에 관해서는 公報의 發行을 中止하기도 하였다. 또한 單一의 會計方法으로도 充分한 것을 折衷案으로 몇 가지의 會計方法을 提示함으로써一般的으로 認定된 會計節次를 急增시켰던 것이다. 그 結果 監查人이나 經營者의 便宜에 따라 原則이 活用되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美國會計學會는 앞서 考察한 1936年的 報告書를 發行한 이후 1941年에는 Accounting Principles Underlying Corporate Financial Reports, 1948年에는 Accounting Concepts and Standards Underlying Corporate Financial Statements, 그리고 1957年에는 Accounting and Reporting Standards for Corporate Financial Statements의 3次에 걸친 改正版 報告書를 發表하였다. 1936年的 報告書는 原則과 規則 또는 方法의 混合物로서 당시에 表面化되고 있던 會計의 基本問題를 取扱한 것이다. 原價와 價值(costs and value), 利益의 測定(measurement of income), 資本과 剩餘金(capital and surplus)의 3側面을 中心으로 論議한 이 報告書는, 1920年代에 이루어지고 있던 그릇된 會計慣行을 修正하여 歷史的原價主義에 입각한 原價의 配分過程을 一般에게 認識시키는 데 큰貢獻을 하였다. 그 후에 3回 걸친 改正版과 8개의 補足的 報告書(Supplementary Statements)는 최초에 發表된 20개의 原則을 修正·改廢하면서 包括的인 知識體系를 갖는 하나의 理論으로 擴大·發展시켰다. 그러나 3回의 改正版 會計原則(基準)은 1936年에 취하고 있던 基本的인 입장, 즉 歷史的原價主義, 費用·收益의 對應, 損益計算書 중심의 회계 등을 变경시키지 않고 일관된 方向을 지켜왔다. 1941年的 改正版에서는 그 内容을 原價(cost), 收益(revenue), 利益(income), 資本(capital) 등으로 4區分하여 體系化하였다. 1948年的 改正版에서는 그 表題부터 종래에 使用되어 오던 原則(principles)이란 用語대신 基準(standards)이란 用語로 바꾸고 그 内容도 보다 體系化시켜 資產(assets), 利益(income), 負債 및 株主持分(liabilities and

stockholders' interest), 그리고 財務諸表(financial statements) 등으로 4區分하고 利益의項目에서는 收益과 費用을, 그리고 負債 및 株主持分의項目에서는 負債와 株主持分을 각각 별도로 구분 설명하여 報告書로서 한층 理論的으로 體系化되었다. 1957年的 改正版은 1936年的 報告書를 포함하여 1941年 및 1948年的 改正版과 8개의 補足的 報告書를 면밀하게 分析하여 發表된 것이다. 그러므로 美國會計學會의 常任委員會가 發表한 다른 어떤 報告書보다도 한층 概念的으로 整理되었다. 그러나 이것도 嚴密하게 말하면 理論에 깊이 뿌리를 박고 있다고 하기보다는 經驗에서 導出된 慣習(conventions derived from experience)에 의거하여 마련된 것이다.

美國會計學會가 그의 創立 50周年을 紀念하기 위하여 1966年に *A Statement of Basic Accounting Theory*(ASOBAT)를 내놓았다. 이것은 종래의 AAA 報告書가 外部報告問題에 한정하여 公表하였던 것과는 달리 外部報告 뿐만이 아니라, 内部報告를 포함하는 會計全般에 걸친 廣範한 基準을 마련하였다는 점에 特徵이 있다. 또한 종래의 公報나 報告書와 비교할 때 當時의 特有한 問題點과 관련하여 會計原則 및 基準이 마련된 것과는 달리 이것은 보다 廣範한 會計基準을 提示하고 있다. 즉 目的適合性(relevance), 檢證可能性(verifiability), 不偏性(freedom from bias), 計量可能性(quantifiability)를 主軸으로 한 보다一般的인 理論體系를 提示하였다. 그리고 이들諸基準을 充足시킬 수 있는 모든 資料는 報告되어야 한다고 提唱하였던 것이다. 또한 歷史的原價와 종래에는 評價上一般的으로 禁止되어 왔던 時價는 다같이 目的適合性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 評價額은 다같이 損益計算書와 貸借對照表에 並記하여 報告할 것도 勸告하고 있다.

ASOBAT는 1970年に 發表된 APB Statement No. 4 및 그 이후의 會計原則의 發展에 지대한 影響을 미쳤다. 그러나 ASOBAT를 批判하는 입장에서는 ASOBAT準備委員會가 그自身 演繹的方法을 徹底하게 따르지 않고 있다고 主張한다. 또한 4가지의 基準을 牢연히 定義하고 그 下位에 있는 指針과의 關係를 明確하게 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會計實務를 評價한 후 그 諸基準의

實施方法을 提示하지 못하고 있다는 批判을 받고 있다.

美國會計士會와 美國會計學會의 會計原則制定努力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前者는 주로 會計實務로부터 會計原則을 導出하려는 實用主義的 接近方法을 試圖해 왔고, 後者는 演繹的 推論에 의한 概念的 接近을 통하여 會計의 指導原理로서의 會計原則을 樹立하려는 立場을 취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双方은 다같이 最初에 會計原則을 필요로 했던 基本的 問題解決에는 흡족하지 못했다. 美國會計士會는 職業會計士의 大多數가 Accounting Research Bulletin에 準據하고 있다고 主張하고 이것이 會計實務를 變更시킨 많은 事例를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美國會計學會는 그들이 開發한 概念을 實踐的으로 할 수 있는 強制力を 갖고 있지 못하였다. 따라서 그들의 報告書가 公認會計士의 당면問題를 解決하는데 별다른 役割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여기에서 職業會計士들의 實用主義的 接近方法과 會計學者들의 演繹的 接近方法을 統合시켜 論理的 體系에 있어서나 實踐的一貫性을 갖는 會計原則의 수립이 要請되었다.

1957年에 美國公認會計士會의 新任會長으로 選出된 Alvin R. Jennings는 會計概念의 再檢討와 아울러 종래의 應用研究의 方向에서 基礎研究로의 重點 移行을 強調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會計研究公報』 第1號가 公刊된 1939年으로부터 20年이 경과한 1959年에는 美國公認會計士會의 研究計劃은 會計原則에 대한 새로운 接近을 促進하기 위하여 再編成되었다.

Committee on Accounting Procedure와 Accounting Research Department가 없어지고 그대신 Accounting Principles Board(APB)와 Accounting Research Division(ARD)이 後任機關으로 設立되었다. APB는 주로 職業會計士로 構成되고 ARD는 주로 會計學者로서 構成되었다. Accounting Research Studies(ARS)를 作成하기 위한 目的으로 常任委員이 組織되었다. ARS는 AICPA의 公式見解는 아니나 會計調查研究部長의 權限으로 公表되고 APB에 의해서 行動에 옮기기 前에 널리 一般에게 普及하였다. APB는 ARS를 檢討한 후 이를 承認 또는 拒否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AICPA의 機構改編에 따라 다음과 같은 4段階를 거쳐 광범한 會計上의 問題를 解決하려고 하였다. 즉 ① 會計公準의 設定, ② 會計原則의 設定, ③ 特定狀況에 있어서의 會計原則을 적용하기 위한 規則 또는 指針의 設定, ④ 研究活動 등이 그것이다. 이 같은 研究計劃에 따라 나타난 것이 M. Moonitz에 의한 ARS No. 1, The Basic Postulates of Accounting(1961)과 M. Moonitz와 Robert T. Sprouse의 ARS No. 3, A Tentative Set of Broad Accounting Principles for Business Enterprises(1962)이다. 廣範한 會計原則은 이미 확립된 一聯의 公準으로부터 演繹的으로 導出한 것으로서 그것은 順次의으로 特定의 研究分野에 대한 研究指針이 된다. 이로부터 보다 優秀한 會計實務가 不可避의 結論으로서 출현될 것을 期待하였다. 그러나 1962年4月에 APB는 ARS No. 1과 ARS No. 3가 “會計思考에 價值 있는 貢獻을 하였으나 現時點에서 認定되기에에는 現在의 一般的으로 認定된 會計原則과는 너무 乖離되어 있다”고 하는 이유를 들어 이를 거부하였다.

그 후 새로운 研究를 Paul Grady에게 委任하였다. 이에 따라 1965年에는 P. Grady에 의한 Inventory of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for Business Enterprises가 ARS No. 7으로 發刊되었다. 이것은 現在의 會計實務로부터 一般規則의 카다로그를 作成한 것이다. 그는 10個의 基礎的 概念으로서 (1) 私有財產權을 認定하는 社會 (2) 企業實體 (3) 繼續性 (4) 貨幣的表示 (5) 一貫性 (6) 企業體間의 多樣性 (7) 保守主義 (8) 情報의 信賴性 (9) 重要性 (10) 適時性 등을 提示하고 會計原則을 5개의 目的別 Section으로 分類하여 각각에 해당하는 原則을 ARB, APB Opinion, SAP 및 SEC報告書와 관련시켜 整理해 놓고 있다. Grady는 自己의 任務가 會計原則을 發見하는 것이 아니라 確認하는 것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고찰하였다. 그의 관점은 現存하는 會計環境에 限定시키고 있기 때문에 일반이 널리 採擇하지 않고 있는 會計方法을 除外시켰던 것이다. 여하튼 P. Grady에게 委任된 會計原則도 別다른 成果를 거두지 못하고 말았다.

여기서 AICPA는 지금까지 누구도 明瞭한 體

系를樹立하지 못하고神聖視하여오던일반적으로認定된會計原則을體系的으로展開할수있는機構를提供하여會計實務를評價하고發展시킬수있는機構를표명하려하였다. 이에따라APB는5年間의調查研究끝에APB Statement No.4, Basic Concepts and Accounting Principles Underlying Financial Statements of Business Enterprises를내놓게되었다. 그러나이것역시會計理論의基礎를이루는基礎的諸概念을充分히檢討하지못한관계로會計原則을樹立하는過程에論理上不合理한점이많아同報告書가發表된후에學界 및實務界로부터적지않은批判을받게되었다. APB의비능률적인활동으로말미암아AICPA의APB에서는會計原則을수립하는問題를재검토하지않으면안되게되었다. 1971년3月AICPA는Francis M. Wheat를委員長으로하는委員會를設置하고이로하여금會計原則樹立節次를評價하는동시에會計原則을制定하는새로운機構를勸告하도록하였다. 이에따라나타난機構가FAF와FASB인것이다.

여하튼APB는그存續期間동안31個의Opinions과4개의Statements를發表하였다. Opinion中 많은것들이財務情報의公開를擴張시켰다. 예를들면Opinion No.15損益計算書上에株當利益(earnings per share)에관한情報を公開할것을勸告하였고, Opinion No.19는財務報告書에財政狀態變動表를포함할것을요구하였으며, Opinion No.22는財務諸表의脚注에重大한會計政策을public할것을요구하였다.

Wheat Committee의報告書에따라나타난것이FAF와FASB와함은上述한바있거니와1973년3月에는APB에代身하는FASB가設置되고獨立機關인FAF의9名의評議員이任命되었다. APB가18名의委員中全員이公認會計士고그중14명이主要公認會計士事務所와관계되어있었으며, 또한part-time으로無給이었던것에대해서FASB의委員은5年の任期를가지고full-time의비교적높은報酬를받는7名의委員으로構成되었다. 그중4명이公의義務에從事하는公認會計士이며다른3명은財務報告分野에서廣範한經驗을갖고있는非會計士이다.

FASB가發足된1973年7월이래1978年4月現在로21가지의Statements of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를發表하였고Trueblood Committee의『財務諸表의目的』에관한報告書를基礎로한『財務會計및報告를위한概念構造』(Conceptual Framework for Financial Accounting and Reporting)를수립하기위한노력을傾注하고있다. 여하튼앞으로民間團體에委任된會計原則의制定努力의마지막이될지도모를FASB의努力에어느程度의成果가있을지모든會計關係者들은注視하고있다.

2. 우리나라「企業會計原則」의制定과 그후의動向

우리나라의「企業會計原則」은1958年7月2日에財務部告示第169號로서발표된「財務諸表規則」을제정하기에앞서, 이를지도할수있는指導原理로서會計原則의 필요성을認定하여제정하게된것이다. 즉「財務諸表規則」은會計行爲의具體的인指針을制定하는基礎原理로서의會計原則이없어서는아니되었다. 이와같은요청에따라서당시財務部長官의諮詢機關으로있던財政金融委員會내에企業會計準則制定分科委員會를두어기업회계원칙의제정작업이시작되었다. 그리하여1957年11月初에上記한分科委員會는「企業會計原則」(처음에는企業會計準則이라불렸다)을起草할起草小委員으로서8名과幹事2名을選出하여,同年12月6日부터每週金曜일마다銀行集會所에모여6個月餘의노력끝에「企業會計原則」과「財務諸表規則」을제정하는방대한작업을끌마치었다.

이와같은會計諸則이제정된당시의우리나라經濟는6·25動亂의막심한피해를어느정도회복하고安定期에접어들고있었으나,企業會計制度는발달되지못한데다가統一되지못하고未備한점이많아서기업의經營成果와財政狀態를정확하게파악하기곤란한실정에있었다. 이와아울러政府의經濟復興을至上課業으로삼고企業의合理化를재촉하는동시에外資의導入,企業의健全化,租稅의公正化,證券投資의民主化,金融의適正化등당시긴급히추진해야할문제가山積되어있었다. 이와같은문

제를合理的으로 解決하기 위하여 會計原則 및 財務諸表規則의 제정이 시급히 요청되었다.

이와 같이하여 制定된 「企業會計原則」과 「財務諸表規則」은 그동안 우리나라 企業에近代的 會計方法을 보급하고 會計實務의 質的인 水準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商企業과 製造企業의 財務諸表作成에 있어서 統一를 기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會計原則은 會計行爲의 規範이며 實踐基準으로서의 性格을 갖고 있다. 그리고 會計原則은 또한 企業環境과 企業與件의 變화에 따라 새로이 정비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 같이 볼 때 우리나라의 「企業會計原則」이 成文化된 뒤 15년이 경과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商法改正에 따른 1964年 5月 27일 「財務諸表規則」의 用語修正 이외에 아무런 改正이 없었던 것은 會計原則의 중요성이 얼마나 경시되어 왔는가를 말하여 주고 있다.

最近(1973年 8月) 財務部의 證券審議委員會傘下 企業會計制度審議分科委員會는 「企業會計原則改正案」을 내놓았다. 改正案을 내놓으려고 한 직접적인 動機는 1972年에 실시된 8·3經濟措置 이후에 제정 공포된 企業公開促進法(1972年 12月 30日)과 1968年에 제정 공포된 資本市場育成에 관한 法律이 改正(1972年 12月 30日)됨에 따라, 앞으로 증가될 上場法人과 이와 利害關係를 가지고 있는 者의 權益을 保護하기 위해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動機에서 「會計原則改正案」이 마련되었음인지, 이곳에서는 會計原則이 法的 強制力を 갖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會計原則을 法的 强制력을 갖는 것으로 규정한 根據는 證券去來法에 의거하였던 것으로, 同法第126條 8項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었다. “上場法人 기타 이 法의 적용을 받는 者의 會計와 公認會計士의 監查에 統一性과 客觀性을 부여하기 위하여 第126條의 규정에 의한 證券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一般的으로公正妥當하다고 認定되는 會計處理의 原則을 大統領令으로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곳에서 말하고 있는 ‘……會計處理의 原則’은 모든 企業의 會計業務을 指導하는 原理로서의 原則이라고 하기 보다는 上場法

人과 同法의 적용을 받는 者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는 ‘會計指針’의 뜻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會計原則은 理論으로서의 普遍妥當性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또 모든 企業에 대해서 公통적으로 적용될 會計行爲의 基準을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特定企業에 대한 會計行爲를 強制化하는 형식으로 마련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證券去來法에 따라 모든 企業에 公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會計原則을 제정하면, 이는 利害를 달리하고 있는 다른 集團과 관련시켜 볼 때公正性을 상실하고 말게 된다. 이와 같은 점에서 「企業會計原則改正案」이 「上場法人 등의 會計處理에 관한 規程」이란 이름으로 다시 수정되어 開議를 通過하여 大統領令으로 公布(1974年 7月 18日)하게 된 것이다.

한편 본래 意圖하였던 「企業會計原則」의 改正作業은 「上場法人 등의 會計處理에 관한 規程」이 發表된 뒤인 1975年 4月에 「上場法人 등의 財務諸表에 관한 規則」을 財務部令으로 制定·公布되고 나서의 일이었다. 즉 오랫동안 改正을 보지 못했던 「企業會計原則」과 「財務諸表規則」은 1976年에 가서야 改正된 것이다. 改正된 「企業會計原則」은 1976年 7月 財務部의 證券審議委員會 企業會計分科委員會의 改正報告의 형식으로 발표되었으며 「財務諸表規則」은 1976年 7月 財務部告示로 改正·發表된 것이다.

이상과 같은 過程을 거쳐 우리나라의 企業會計原則이 改正되었기 때문에 「企業會計原則」은 「上場法人 등의 會計處理에 관한 規程」과 大同小異하게 작성되었고, 또한 「財務諸表規則」은 「上場法人 등의 財務諸表에 관한 規則」과 類似하게 마련되었다. 본래 會計原則은 모든 企業이 公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會計行爲의 指針을 마련하여야 하는 것이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會計原則의 制定作業이 上場法人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原則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企業會計原則을 마련하였는데 會計原則의 制定 및 改正節次에 있어서나 會計原則의 内容上에 問題點을 안고 있는 것이다.

III. 證券諸法에 의한 會計規則

1. 美國 證券關係諸法의 制定과 内容

1929年부터 시작된 經濟恐慌을 계기로 하여 美國에서는 一般投資者들이 막대한 損失을 입는 경우가 허다하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美聯邦政府는 證券市場에 대한 一般大眾의 신뢰를 회복하고 一般投資者를 保護하기 위하여 1933年에는 證券法(Securities Act of 1933)을 제정하고, 여기에서 有價證券申告書(registration statement)를 제출토록 하여 證券發行人에 관한 諸般情報들 완전히 공개토록 하였으며, 1934年에는 證券去來法(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을 제정하고 이곳에서는 投資者에게 會社에 관한 情報를 계속하여 公示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1933年부터 投資者를 保護하기 위하여 制定되고 改正 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게 된 證券關係法律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1) 1933年の 證券法(Securities Act of 1933)
- (2) 1934年の 證券去來法(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 (3) 1935年の 公益事業持株會社法(Public Utility Holding Company Act of 1935)
- (4) 1939年の 投資信託證書法(Trust Indenture Act of 1939)
- (5) 1940會의 投資會社法(Investment Company Act of 1940)
- (6) 1940年の 投資顧問法(Investment Advises Act of 1940)
- (7) 1970年の 投資者保護法(Securities Investor Protection Act of 1970)
- (8) 破産法 第10章(Chapter X of Bankruptcy Act)

(1) 證券法의 制定과 그 내용

1932年 F.D. Roosevelt가 大統領으로當選된 후 美聯邦議會의 上院 通貨委員會에서는 證券去來行政의 基本方向에 관해서 2가지法案을 놓고 審議하게 되었다. 그 하나는 株式을 上場함에 있어서 聯邦政府가 發行會社의 内容을 審查하여 上場할 수 있는 會社와 上場할 수 없는 會社를 判斷하도록 權限을 賦與하는 方案이었다. 이것은 投資家에게 不當한 損害를 줄 危險性이 있는 株式을 證券市場으로부터 排除하려는 意圖에서 제한된 것이었다. 다른 하나의法案은 聯邦政府가 株式의 上場與否를 判斷決定할 것을 避하고

株式에 대한 投資上의 判斷은 各投資家에게 일임하는 한편 政府로서는 上場會社가 投資家에게 情報의 公開, 특히 會計內容을 公表(disclosure)하도록 하자는 方案이었다. 論議의 결과 첫번째法案은 憲法에 違反된다는 違憲論과 企業의 經濟活動에 聯邦政府의 介入을 警戒하는 意見이 支配的이었기 때문에 論議의 촛점은 第2案에 集中되어, 이法案이 1933年 3月 29日 Roosevelt 大統領의 立法要請의 書翰과 더불어 上下兩院에 提出되었다. 委員會에 의한 公聽會와 이에 대한 修正調整을 거친 뒤에 同年 5月 27日에 大統領의 署名에 의하여 同法의 成立을 보게 되었다. 이와 같이 하여 制定된 것이 1933年的 證券法(Securities Act of 1933)이다.

大恐慌 후의 New Deal 政策의 一環으로서 證券法이 聯邦法으로 制定된 憲法上의 根據는 合衆國에 委讓된 權限事項이 州際商業 및 郵便과 관계가 있다는 점에 根據를 둔 것이다. 즉 證券의 發行과 交付는 州際商法이나 郵便의 手段을 利用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郵便法으로서의 證券法에 따라 規制對象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聯邦法으로서의 證去法은 1887年에 制定된 州際商業法(Interstate Commerce Act)의 흐름과 같은 性格을 갖고 있다.

證券法에 의한 規制方法은 公開主義을 採擇하고 있는 것이 그 特徵으로 되어 있다. 證券法은 앞에서도 說明한 바와 같이 어떤 會社의 證券이 發行될 수 있는가 하는 基準이나 發行證券의 價值를 決定하는 基準을 제시함으로서 證券의 發行을 직접 規制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證券發行時に 그것이 어떤 證券인가 하는 것을 判斷하는 데 充分한 情報를 正確하게 投資者에게 公開할 것을 要求하고 그에 대한 判斷은 投資家自身이 할 수 있도록 하는 公開主義을前提로 하고 있는 것이다.

1933年的 證券法의 骨子를 보면 대략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 (1) 特殊한 證券에 관한 少數의例外를 除外하고는 證券의 發行會社는 證券去來委員會에 登錄申告書(registration statement)를 提出함과 아울러 證券의 購入者에게 趣旨書(prospectus)의 交付를 義務化하였다. 그렇지 않고서는 세로

운 證券을 各州에 걸친 去來方法(interstate commerce) 또는 郵便으로 賣出할 수 없도록 하였다.

(2) 단일 登錄申告書가 重要한 事實에 대해서 그릇된 記述을 하였다든가 또는 이것을 省略한 경우에 그 證券을 取得한 사람은 發行會社, 그의 任員, 理事 또는 引受會社를 告訴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聯邦去來委員會(Federal Trade Commission)는 登錄申告書가 適切하지 못하다고 認定될 경우에 登錄申告 效力停止命令(stop order)을 발하여 申告效力의 發生과 그 證券의 發行을 防止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략 위와 같은 내용으로 되어있는 證券法은 登錄申告書에 記載하여야 할 事項이 規定되어 있는데 가장一般的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Form S-1이라는 것이다. Form S-1은 普通의 商工業會社가 證券을 發行할 때 利用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두部分으로 나누어져 있다. 第1部(part 1)는 趣旨書(prospectus)에 포함될 것들(①~②)이고, 第2部는 證券去來委員會(SEC)의 要請에 따라 제출될 追加資料들이다(②~③). 이와같이 하여 이루어진 31個項目의 記載事項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發行價格 및 發行條件 ② 發行計劃 및 引受業者와 引受業者の 責任 ③ 登錄會社에 의한 發行受取金의 使用 ④ 現金에 의하지 않는 發行證券의 發行額 ⑤ 資本構成 ⑥ 利益比較要約表 ⑦ 設立의 州, 日時 및 組織形態 ⑧ 申告會社의 支配會社와 支配基準 ⑨ 事業內容 및 過去 5年間의 發展狀況 ⑩ 主要工場, 鎳山 및 有形固定資產 ⑪ 發起人名 및 發起人과의 去來(5年 以內에 設立된 會社의 경우) ⑫ 係爭中의 訴訟 ⑬~⑯ 株式, 社債, 그 밖의 發行申告를 完了한 證券에 관한 情報 ⑯ 理事 및 任員의 姓名 및 職業(過去 5年) ⑰ 理事 및 任員에 대한 報酬 ⑱ 申告會社 및 그 子會社株式의 買受優先權의 現存數 ⑲ 主要株主 ⑳ 理事, 任員 등 主要去來에 관한 利害關係 ㉑ 財務諸表 ㉒ 發行證券에 관한 市場制約 등에 관한 契約事項 ㉓ 發行費用 ㉔ 申告書 記載의 專門職業人(公認會計士 등을 包含)과 會社와의 利害關係 ㉕ 特別한 關係者에 대한 證券發行額 ㉖ 非登錄證券의 發行額 ㉗ 子會社

一覽表 ㉘ 保存하고 있는 營業權 및 利權(子會社가 保有하고 있는 것도 包含) ㉙ 任員 및 理事의 免責條項 ㉚ 發行諸株式의 受取金 明細 ㉛ 財務諸表 一覽表

이와 같이 登錄申告書에 따라 公開되는 情報中에서도 財務諸表는 重要한 것이기 때문에 Form S-1 이외의 申告書類樣式에 있어서도 特殊한 證券에 관한 몇몇의例外를 빼고는 大部分의 樣式에 있어서도 記載事項으로 하고 있다.

(2) 證券去來法의 制定과 그 內容

1933年的 證券法이 證券發行時의 公開制度를 規定한데 대해서 1934年的 證券去來法(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은 登錄後의 流通證券을 對象으로 하여 投資家에 대한 繼續的인 公開를 規定하였다는 점에 特徵이 있다. 證券去來法의 內容은 대략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 (1) 新規 및 既發行 證券의 去來를 對象으로 하며 發行者가 그 去來所와 證券去來委員會(Securities and Exchanges Commission, SEC)에 申告하지 않고서는 上場할 수 없다.
- (2) 모든 證券去來所는 약간의例外를 제외하고 서는 證券去來委員會에 登錄하고 그의 監督을 받아야 한다.
- (3) 去來所의 去來方法에 대해서도 證券去來委員會가 監督規制의 權限을 갖는다.
- (4) 發行者에 의한 申告에 대해서는 年次報告(annual report) 및 그밖의 것을 證券去來委員會와 去來所에 申告하여 最近의 情報를 포착할 것.
- (5) 店頭去來業者에게 證券去來委員會에의 登錄을 요구하고 이를 監督할 것.
- (6) 證券去來金融에 대해서는 聯邦準備銀行이 matching rule을 마련하여 證券去來委員會가 그것을 提示하고 監督할 것.

위와 같은 1934年的 證券去來法에 따라 證券去來行政은 종래의 聯邦去來審議會(Federal Trade Commission)로부터 證券去來委員會(SEC)에 移管하게 되었다.

1964년에 證券去來法이 改正된 뒤에는 上場會社뿐만 아니라 總資產 100萬弗이상으로 持分證券의 保有者 500名 以上의 會社는 證券去來委員會에 登錄하도록 함과 아울러, 登錄會社는 每事

業年度 終了後 90日 以内에 年次報告書를 證券去來委員會에 提出하도록 하였다.

이 年次報告書의 樣式에도 여러가지 類型이 있는데 一般商工業會社에 適用되는 代表的인 것은 Form 10-K로서 決算後 90日 以内에 證券去來委員會에 提出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에 記載事項은 다음과 같다.

① 主要한 製品 및 用役의 提供 ② 過去 5年間의 事業活動의 概要 ③ 主要한 工場・礦山・有形固定資產의 所在地 및 一般的 特性 ④ 支配會社와 子會社의 一覽表 ⑤ 重要한 係爭中の 訴訟 ⑥ 發行會社外 株式數의 増減 ⑦ 株主權 ⑧ 理事 및 任員의 一覽表 ⑨ 理事 및 任員의 免責條項 ⑩ 財務諸表 ⑪ 主要한 議決權株主, 理事 및 任員의 保有株式數 ⑫ 理事에 관한 資料 ⑬ 理事 및 任員의 報酬 ⑭ 經營者에게 賦課된 自社 또는 會社株式의 優先取得權 ⑮ 一定의 去來에 대한 經營者 등의 利害關係(①~⑩까지가 part 1이고 ⑪~⑯까지가 part 2이다).

證券去來法의 規制를 받는 登錄會社는 證券去來委員會에의 年次報告書(annual report)의 제출備置, 公衆의 열람의에 株主에게 年次報告書를 직접 傳達할 필요가 있다. 株式會社法에는 財務諸表는 株主總會에서의 承認事項이 아니고, 또 반드시 株主에게 送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證券去來委員會는 委任狀規制를 통해서 株主에게 年次報告書를 送付하도록 間接的인 規制를 하고 있다.

이 年次報告書에는 다음과 같은 점을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다. (1) 最近 1個年の 財政狀態 및 產業成績을 나타내는 財務諸表(當該會社 및 그의 從屬會社의 財政狀態 및 營業成績을 反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聯結財務諸表) (2) 株主에 送付되는 報告書로서의 財務諸表와 證券去來委員會에 제출되는 年次報告書로서의 財務諸表간에는 적용되는 會計原則 및 會計慣行에 差異가 있기 때문에 그 差異가 當該會社의 財政狀態와 營業成績을 表示하는데 중대한 影響을 미칠 경우에는 그 差異點과 그것이 미치는 影響 (3) 獨立會計士에 의한 監查證明.

以上과 같은 年次報告書外에 中間報告書의 提出도 또한 義務化하고 있다. 中間報告書에는 半

期報告書(semi-annual report), 四分期報告書(quarterly report), 그리고 臨時報告書(current report)가 있다. 앞의 두 報告書는 定期的으로 公開되는 情報인데 반해서, 뒤의 報告書는 特別한 事件이 나타났을 때 臨時的으로 公開되는 情報이다.

1969년까지는 定期的인 公表는 情報로서 半期報告書가 要求되었고 半期의 經過後 45日 以内에 證券去來委員會에 提出하도록 되어 있었다. 四分期報告書는 뉴욕株式去來所와 아메리칸株式去來所가 그의 公表를 요구하고 있어 많은 上場會社가 發表하고는 있으나 證券去來法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1969년에는 證券去來法의 公表方案을 再檢討하고 半期報告書를 四分期報告書로 대체함과 아울러 臨時報告書를 廢止할 것이 提案되었다. 그結果 半期報告書는 廢止되고 四分期報告書가 각 四分期 經過後 45日 以内에 證券去來委員會에 提出하도록 하였다. 또한 臨時報告書는 廢止되지 않고 그대로 存續하도록 하였다.

臨時報告書는 上場企業에 중대한 事件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Form 8-K에 따라 事件이 발생한 다음날 10日 以内에 證券去來委員會에 提出하도록 하였다. 여기에서 重大한 事件이란 다음과 같은 것을 指稱한다.

① 登錄會社에 있어서 支配持分의 变동 ② 正常的 經營活動以外의 方法으로 거대한 資產의 取得 또는 處分 ③ 重大한 訴訟事件의 발생 ④ 登錄된 證券의 增加 또는 減少 ⑤ 登錄된 證券에 대한 擔保設定의 变경 ⑥ 上場證券의 中대한 義務不履行 ⑦ 發行한 證券額의 큰 增加 ⑧ 登錄會社 監查人の 变동

四分期報告書에는 要約財務情報와 資本構成 및 株主持分을 記載하도록 되어 있다. 一般의 商工業會社에서 사용되는 代表的인 樣式은 Form 10-Q로서 이에 記載事項은 다음과 같다.

要約財務情報로서는 ① 純賣出額 ② 經常收益 ③ ① 및 ②의 收益의 合計額 ④ 賣出原價 및 諸經費 ⑤ 所得稅 및 異常項目控除利益(또는 損失) ⑥ 所得稅充當額 ⑦ 小數株主持分에의 割當額 ⑧ 異常項目控除前利益 ⑨ 異常項目 및 異常項目控除額 ⑩ 純利益(또는 損失) ⑪ 一株當利

益 ⑫ 一株當의 配當金.

資本構成 및 株主持分에 대해서는 ① 負債(短期負債·長期負債·負債合計額) ② 移延收益 ③ 少數株主持分 ④ 優先株 ⑤ 普通株 ⑥ 資本剩餘金 ⑦ 利益剩餘金(前期移越額·前期損益修正項目·當期純利益·利益剩餘金合計額) ⑧ 配當 ⑨

그밖의 調整額 ⑩ 自己株式 ⑪ 株主持分 合計額.

中間報告書도 年次報告書와 마찬가지로 一般的으로 認定된 會計慣行에 따라 작성할 것이 要求되고 있다. 그러나 年次報告書와 다른 점은 財

務報告가 上述한 바와 같이 簡略化된 損益計算書項目이 중심이 되어 있고, 貸借對照表項目에 있어서도 資產項目이 省略되어 있다는 점이다. 또한 中間報告書에 관해서는 年次報告書와는 달리 公認會計士의 監查證明을 필요로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2. 우리나라 證券諸法의 制定과 内容

1962年부터 시작한 經濟開發個 5年計劃을 수행함에 있어서 經濟發展에 필요한 資本을 調達

證券去來法改正의 主要內容

1976. 12. 22

| 目的 | 立法措置 | 細部事項 |
|-----------------|-------------------------------------|--|
| 1. 企業公示制度의 補完 | 가. 企業登錄制度의 導入 (§ 3~§ 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登錄對象: 上場하고자 하는法人, 募集 또는 賣出하고자 하는 법인, 上場法人과 合併하고자 하는 非上場法人, 其他委員會가 指定하는法人. ○ 登錄事項: 決算에 관한 書類, 株主名簿 기타 大統領令이 定하는 書類. ○ 企業指導: 資金調達의 方法, 財務構造의 改善 等 經營合理화에 관한 事項, 企業公開에 관한 事項. |
| | 나. 上場法人의 半期報告書提出義務化(§ 93) | |
| 2. 安定經營權의 確保 | 가. 株式公開買受制度 (TOB)의 導入(§ 21~§ 2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申告者: 場外에서 不特定人으로부터 特定有價證券을 買受하여 하는 者 ○ 申告內容: 數量, 價格, 時期 等 ○ 公開買受에 의한 經營權 引受可能 |
| | 나. 上場法人의 株式分散維持(§ 200~§ 20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上場法人 發行株式의 一定數 以上 保有禁止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原則: ② 10% 超過株主—上場當時의 所有比率 또는 上限(51%) 以上 保有禁止 ④ 上記株主以外者—10%의 所有比率 以上 保有禁止 ② 例外: ④ 大株主로 부터의 直接 買受分 ④ 公開買受分 ④ 大統領令으로定하는 機關의 所有分 ④ 委員會의 承認을 받은 경우 |
| | 다. 株主權委任行使의 一部規制(§ 19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委任狀을 利用한 群小株主의 經營權 引受豫防 |
| 3. 證券機關受容態勢의 補強 | 가. 證券會社業種의 分離 (§ 2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賣買, 委託賣買(仲介), 引受豆 業種 3分化 |
| | 나. 證券會社의 公益性 提高 및 專門化(§ 2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寡占株主의 株式讓渡時 委員會의 同議로 人的構成의 繼續性 維持 ○ 業種·經營度에 따른 資本金差等化로 大型化 誘導 |
| | 다. 證券金融會社의 制限의 受信機能賦與(§ 16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短資業務 ○ 債券賣買業務(還買, 轉賣條件附) |

| | | |
|---------------------|--------------------------------|--|
| 4. 公正去來基盤의 確立 | 가. 内部者去來의 禁止制度採擇(§ 188) | ○10% 以上의 株主 또는 發行會社의 任職員이 企業內部情報を利用한 去來로 取得한 利益은 企業에 返還 |
| | 나. 上場會社의 相互株保有制根據 마련(§ 189) | |
| | 다. 場外去來에 관한 規則制定根據設定(§ 194) | |
| | 라. 證券會社任職員의 賣買去來制限(§ 42) | |
| 5. 上場法人에 대한 事後管理 強化 | 가. 上場法人의 財務管理基準 設定根據 마련(§ 192) | ○一時에 過大社 資本轉入等 不當한 財務處理規制 |
| | 나. 重要事項申告의 法制化(§ 186) | ○營業의 讓渡·停止, 企業의 合併·整理, 不渡發生 또는 銀行去來停止, 事業 目的 其他 經營上 重大한 영향을 미치는 事項 |
| | 다. 統一規格證券管理根據의 法制化(§ 187) | |
| 6. 證券關係機關의 體制改編 | (1) 證券管理委員會의 構成(§ 118~§ 129) | (가) 構成: 常任一委員長, 委員 2人 非常任一韓銀總裁, 去來所理事長, 財務部次官 (나) 委員長 및 委員任命: 財務部長官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 (다) 委員會의 設置: 監督院에 設置 |
| | (2) 證券監督院의 性格(§ 139~§ 144) | (가) 機構: 監督院長一委員會委員長이 兼任 副院長 2人 (나) 法人格: 無資本特殊法人 (다) 豫算: 檢查手數料, 企業登錄手數料, 約定代金의 一定率, 政府出捐金 및 財產貸與根據 마련 |
| | 가 證券管理委員會設置運營 | (3) 主要業務 ① 有價證券의 發行 및 去來에 관한 計劃의 樹立과 執行 ② 有價證券의 登錄과 企業指導 ③ 有價證券申告書의 審查 및 效力發生指定 ④ 上場法人의 事後管理 ⑤ 場外市場에 있어서의 有價證券賣買去來 監視 ⑥ 登錄法人 및 上場法人의 企業分析과 企業內容 公示 ⑦ 證券市場의 信用業務 管理 ⑧ 證券關係의 監督 및 檢查 ⑨ 公認會計士 監查報告書의 分析과 監理 ⑩ 證券政策에 관한 諮問 및 對政府建議 |
| | (4) 財務部長官의 監督 | ○委員會에 對한 指揮監督權 ○委員會決定에 對한 是正, 變更, 停止命令權 ○包括命令權 |
| | 나. 證券去來所의 體制純化(附則 § 11) | ○民間出資分의 買入消却 可能根據 設定 ○去來所의 営利性 排除 ○證券會社代表 參與機會 賦與(非常任監事) |

資料: 證券監督院, 證券調查月報, 1977年 6月號, pp. 30~31.

하고 이를 效果的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政府에 諸法을 制定하였다.
서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은 證券關係 (1) 證券去來法(1962年月1 15日 法律第972號)

- (2) 資本市場育成에 관한 法律(1968年 11月 22日 法律第2046號)
- (3) 企業公開促進法(1972年 12月 30日 法律 第2420號)
- (4) 證券投資信託法(1969年 8月 4日)

1962年 1月 15일에 制定된 우리나라 證券去來法은 同法 第 1條에 明示되어 있는 것과 같이 “有價證券의 發行과 買賣 기타 去來를 公正하게 하여 有價證券의 流通을 正常化시켜 國民經濟의 發展과 投資者的 保護를 目的으로” 하여 제정된 것이다. 이와 같은 目的으로 制定된 證券去來法은 1976年末까지 7次의 改正作業을 거쳐 현행의 證券去來法은 모두 11章 附則으로 되어 있고 施行令(大統領令)과 施行規則(財務部令)을 두고 있다. 특히 1976年 12月 22日에 國會를 통과된 法律은 지금까지의 部分의 補完 및 菲요성에 副應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改正作業과는 달리 政府當局의 強力한 企業公開政策에 힘입어 이루어진 우리나라 資本市場의 急激한 量的 擴大現象을 지속시킬 수 있는 質的 機能의 強化를 圖謀하고, 그러한 質的 機能強化를 위한 證券管理體制의 改編과 制度改善을 위하여 全面의 으로 改正되었다. 改正된 證券去來法의 主要 改正內容을 要約하면 앞 페이지에 나타난 表와 같다.

특히 1976年末에 改正된 證券去來法 第 7章에서 有價證券의 發行·管理 및 公正한 去來와 證券關係機關의 監督에 관하여 證券去來法이 정하는 事項을 審議決議하기 위하여 일종의 行政委員會의 性格을 갖는 證券管理委員會를 設置하는 118條~129條) 한편, 同委員會의 指示·監督을 받아 有價證券의 發行을 촉진하고 그 管理와 公正한 去來의 철저를 기하여 證券關係機關의 監督과 檢查를 통하여 健全한 資本市場을 育成할 목적으로 證券監督院을 設立하도록(139條~144條) 하고 있는 점은 特記할 만한 变화라고 할 수 있다. 證券管理委員會와 證券監督院은 美國證券去來委員會(SEC)와 類似한 機能과 役割을 수행할 것으로 믿어지며 앞으로 우리나라의 會計發展에 많은 影響力を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會計와 組織적으로 관련된 규정을 보면 ① 上場法人 등에 대한 會計原則을 제정할

수 있고(第195條) ② 公認會計士의 會計監査가 上場法人에 義務化되며(第182條) ③ 「上場法人(財務管理規程)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第192條) ④ 上場法人은 半期報告書의 제출을 義務化하고 있다(第93條).

IV. 韓國 및 美國의 財務諸表

1. 韓美財務諸財表 體系의 比較

會計는 企業의 經濟活動을 測定·報告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으며 測定된 經濟活動은 財務諸表(financial statements)라는 手段을 通해서 企業과 利害關係를 가지고 있는 여러 集團에게 傳達(報告)된다. 이 경우에 작성되는 財務諸表는 特定의 利害關係者를 目標로 하여 별도로 財務諸表를 마련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作成되는 財務諸表는 不特定多數의 財務諸表 利用者(unknown specific users of financial statements)를 위한 一般目的 財務諸表(general purpose financial statements)이다.

一般目的 財務諸表를 作成하는 것은 많은 國家에서 指向하는 財務會計의 目標로 되고 있으나 이 경우에 財務諸表에 具體的으로 무엇이 包含되느냐 하는 問題는 결코 統一되어 있지 않다.

美國의 경우 財務諸表라고 하면 다음과 같은 報告書와 情報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 (1) 貸借對照表(balance sheet)
- (2) 損益 및 利益剩餘金計算書(statement of income and retained earnings)
- (3) 財政狀態變動表(statement of changes in financial position)
- (4) 會計處理方針의 說明(disclosure of accounting policies)
- (5) 財務諸表 註記·註釋(notes to financial statements)

위의 財務諸表 構成要素중 특히 貸借對照表, 損益 및 剩餘金計算書 그리고 財政狀態變動表의 報告書는 基本的 財務諸表(basic financial statements)라고 하며, 이들 報告書를 說明하고 明確히 하는 性格을 갖는 위의 (4) (5)에 關한 情報와는 區別하여 쓰는 傾向이 있다.

貸借對照表에 관해서 보면 일찍이 APB에서는 Balance Sheet(均衡表)가 갖는 誤解를 없애기 위해서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財政狀態表) 또는 Position Statement(狀態表)라는 用語의 사용을 권장한 바 있으나, 아직도 많은 企業이 Balance Sheet란 말을 즐겨 사용하고 있다.

損益 및 利益剩餘金計算書는 우리나라의 損益計算書와 利益剩餘金計算書를 한데 둑어同一한 報告書에 表示한 것이다. 美國의 경우에도 이를 반드시 統合報告하여야 한다는 會計慣行은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損益計算書(income statement)와 利益剩餘金計算書(statement of retained earnings)로 分割하여 揭載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損益計算書의 名稱도 종래에 많이 사용하던 英國式 表現인 profit and less statement란 用語 대신에 income statement 또는 statement of earnings로 표현하고 있어 概念上 income과 earnings의 同一性을 나타내 주고 있다.

財政狀態變動表는 크게 2部로 構成되어 있다. 즉 報告書의 형식을 보면 資金의 源泉(source of funds)과 資金의 使用(use of funds)이 記載되어 있고 그 差額으로서 運轉資本增減額(increase or decrease in working capital)이 表示되어 있다. 이部分이 財政狀態變動表의 第 1部로서 우리나라 資金運用表의 內容에 해당하는 것이다. 財政狀態變動表의 第 2部는 運轉資本의 變動(changes in working capital)라고 쓴以下の部分이다. 이는 보다 정확하게는 運轉資本變動의 要素別 分析(analysis of changes in elements of working capital)을 해놓은 부분이다. 運轉資本이란 流動資產의 金額에서 流動負債의 金額을 차감하여 구한 것이기 때문에 運轉資本의 要素는 당연히 流動資產과 流動負債의 각 項目이 된다. 따라서 運轉資本變動의 要素別 分析에 나타난 金額은 流動資產과 流動負債의 각 項目別 期中の 純增減額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財政狀態變動表(statement of changes in financial statement)라고 불리우는 이 報告書의 名稱은 처음에 Where Got, Where Gone Statement라는 用語로 쓰이기 시작하여 뒤에 Funds Statement, Fund Flow Statement, The Statement of Application of Funds, The Sources and Appli-

cation of Funds Statement, The Statement of Financial Operation, The Statement of Resources Provided and Applied, The Statement of Source and Application of Funds(APB opinion No. 3) 등 여러가지 말로 表現하여 오다가 1971年 3月 APB Opinion No. 19에서 이같이 쓰기로 한 것이다.

以上에서 설명한 貸借對照表, 損益 및 利益剩餘金計算書 그리고 財政狀態變動表는 오늘날 美國에서 年次의으로 報告하는 報告書에同一한 重要性을 가지고 公表하게 되는 基本的 財務諸表가 된다. 끝으로 會計處理方針에 관한 說明에서 會計處理方針(accounting policies)이란一般的으로 認定된 會計原則(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GAAP)에 따라 財務諸表를 作成報告할 때 會社에서 特別히 적용한 特定의 會計原則과 節次(方法)를 말한다. 會社에서 作成報告되는 財務諸表는 利用者の 意思決定에 큰影響을 미치는 것으로 이를 作成할 때 적용한 會計方針을 알고 있지 않으면 안된다. 이같은理由에서 APB는 opinion No. 22에서는 報告會社의 財務諸表에는 財務諸表의 不可缺한 要素(integral part of financial statements)로서 重大한 會計處理方針에 관한 記述(description)을 하도록 한 것이다(APB, "Disclosure of Accounting Policies" Opinion No. 22(New York: AICPA, April 1972).

APB Opinion No. 22에서 들고 있는 會計處理方針은 다음과 같다.

- ① 受容可能한 會計處理方法에서 어느 것을 選擇할 경우
- ② 報告하는 會社가 屬하는 產業에 特別히 적용할 原則과 方法
- ③ GAPP의 臨時的 또는 革新的 適用
이들에 該當하는 例로서는 減價償却方法, 無形資產의 傷却方法, 聯結의 基準, 在庫資產評價方法, 研究開發費에 관한 會計, 長期建設工事契約의 경우에 收益의 認識方法, lease產業의 경우 收益의 認識, 外貨換算 등이다.

會計處理方針을 報告하는 方法과 位置에 관해서는 財務諸表의 註釋(notes of financial statements)과는 별도로 獨立項目으로 表示하는 方法

과, 財務諸表의 註釋에 吸收하여 財務諸表 註釋의 最初의 註釋(initial note)으로 表示하는 方法이 있다. APB Opinion No. 22는 前者の 方法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財務諸表는 그 構成要素에 있어 뿐만 아니라 그 名稱에 있어서도 美國보다는 훨씬 硬直된 면을 보이고 있는 것이 그 特徵의 하나로 지적될 수 있다. 그리고 財務諸表가 어떤 機構 또는 制度에서 규정되었느냐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構成要素로 되어 있다.

(1) 「企業會計原則」(1976. 7. 22. 財務部 證券審議委員會 企業會計分科委員會 改正報告) 第1章 總則 第2와 「財務諸表規則」(1976. 7. 22. 財務部告示 第712號) 條1章 總則 第4條에서는 財務諸表는 다음을 뜻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① 貸借對照表 ② 損益計算書 ③ 利益剩餘金處分計算書 또는 缺損金處理計算書 ④ 各附屬明細書

(2) 「上場法人 등의 會計處理에 관한 規程」(이 것은 1962년에 制定된 證券去來法 第126條 8項의 '.....一般的으로 認定되는 會計處理의 原則을 大統領令으로 定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1974年 7月 18日 大統領令 第7199號로 公表된 것임)에서는 財務諸表로서 다음을 列擧하고 있다.

① 損益計算書 ② 利益剩餘金處分計算書 또는 缺損金處理計算書 ③ 貸借對照表 ④ 各附屬明細書

이곳에서 들고 있는 財務諸表의 要素는 「企業會計原則」 및 「財務諸表規則」과 다른 바 없으나 그 配列順位만이 다를 뿐이다.

(3) 商法은 「計算書類」란 名稱으로 財務諸表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提示하고 있다(商法 第447條).

① 財產目錄 ② 貸借對照表 ③ 營業報告書 ④ 損益計算書 ⑤ 準備金과 利益이나 利子의 配當에 관한 議案

위에서 財產目錄은 貸借對照表와 附屬明細表로서 같음을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다.

(4) 法人稅法 第26條에서는 財務諸表에 해당하는 書類로서 다음을 들고 있다.

① 貸借對照表 ② 損益計算書 ③ 剩餘金計算書 ④ 其他 大統領이 정하는 書類 ④에 該當하

는 書類로서는 株式分布明細書, 非課稅所得 및 受入配當所得 明細書, 剩餘金 處分計算書 등이 있다.

2. 韓美 財務諸表의 相異點

(1) 財務諸表 體制上의 相異

韓國과 美國의 財務諸表 體系面에서 볼 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差異點은 美國에 있어서의 財務諸表는 企業에서 株主·債權者·政府·一般大眾 등 各種 不特定多數의 利害關係者에게 報告하는 一般目的 財務諸表와, 證券法 또는 證券去來法에 따라 强制的 性格을 갖고 證券去來委員會(SEC)에 報告하는 財務諸表는 그 體系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財務諸表를 작성하는데 적용되는 會計基準에 있어서도 實質的인 差異가 없다는 점이다.

즉 美國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營業報告書用 財務諸表와 마찬가지로 一般配布用으로 사용되는 이른바 株主用 年次報告書(stockholders' annual report)로서의 財務諸表가 있는 한편, 우리나라와 같이 法的 強制力を 가지고 公表되는 財務諸表가 있다. 즉 證券去來委員會가 制定한 「規則 S-X」(Regulation S-X)에 따라 作成되는 財務諸表가 그것이다. 그렇다고 「規則 S-X」가 全美國에서 一般的 慣行으로 作成되는 財務諸表와 實質的으로 다른 報告書를 작성하지도 않을 뿐더러 이를 作成할 때 적용하는 會計基準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즉 「規則 S-X」의 實質的 役割은 全國을 통해서 慣習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財務諸表의 작성기준을 전제로 하여 필요한 部分에 法的強制力を 賦與하여 이를 수용토록 하고 있는 것이다. 좀 더 具體的으로 말하면 美國에는 「證券法」또는 「證券去來法」에 따라 證券去來委員會(SEC)에 提出되는 Form S-1(證券法에 따른 有價證券報告書 registration statement 書類樣式), 10-K(證券去來法에 따른 年次報告書 annual reports) 書類 등에 記載되는 證券發行 및 去來用 財務諸表가 있다. 그러나 이를 一般配布用 財務諸表와 證券發行 및 去來用 財務諸表는 그 體制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財務諸表를 작성할 때 적용하는 會計基準에 있어서 實質的인 差異는 없다.

이와 같이 볼 때 美國의 財務諸表는 그 體制가 一元化되어 있는데 反해서 우리나라의 財務諸表는 會計基準을 마련하는 機關 또는 主體에 따라 그 形式과 內容이 多元化되어 있다.

(2) 財務諸表 性格上의 相異

以上에서 韓美 두 나라의 財務諸表의 體系上의 相異點을 考察하였거니와 이같은 相異點은 그 대부분이 經濟·社會의 環境이 다르고 또 각각 會計의 歷史的 背景을 달리하고 있는데서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美國에 있어서는 會計를 포함하는 모든 社會的規範이 慣習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져 있다. 그러므로 商事에 관한 法律만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商法과 같은 統一的인 成文法이 存在하지 않는다. 商事에 관한 立法權은 各州에 委任되어 있어 州別로 相異한 內容의 商事에 관한 法律을 마련하고 있다. 그렇다고 또 모든 州가 商事에 관한 法律을 制定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商事에 관한 法律을 制定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은 美合衆國의 各州의 會社法인 것이지 美合衆國이라는 聯邦國家의 會社法은 아니다.

美國에 있어서의 會社法이 이같이 되게 된 것은, 英國의 慣習法(common law)이 判決例에 따라 약간의 概念, 規則, 理論 또는 諸原則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美國에 있어서의 會計原則은 오랜 歷史的 過程을 통해서 實際의 經驗으로부터 蓄積된 會計慣行이 일종의 慣習法으로 發展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것이 곧 美國會社의 會計實務를 이끌고 나가는 「一般的으로 認定된 會計基準」(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standards)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美國에서는 우리나라의 財務部 證券審議委員會 企業會計 分科委員會에서 改正報告한 「企業會計原則」, 財務部告示로 發表된 「財務諸表規則」 그리고 大統領令으로 公表된 「上場法人등의 會計處理에 관한 規程」 등과 같이 成文化에 의한 綜合的으로 體系化한 會計原則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볼 때 美國의 財務諸表는 會計慣行을 기초로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그것은 法令指向의 性格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营業報告書用으로 사용되는 財

務諸表의 制度的 背景을 이루는 것은 어디까지나 商法이다. 营業報告用의 財務諸表는 商法의 計算規則과 商法의 委任을 받아 (商法 第5條 委任規定) 大統領令인 「株式會社의 計算書類 등에 관한 規程」에 準據하여 작성된다. 또한 報告書用의 財務諸表는 理事에 의하여 作成된 뒤에 監事 및 株主總會의 承認을 필요로 한다.

우리나라는 上場法人과 證券去來法의 적용을 받는 者(上場法人 등)는 財務諸表를 作成報告할 때는 證券去來法 第126條의 規定에 따라 마련된 「上場法人등의 會計處理에 관한 規程」과 「上場法人등의 財務諸表에 관한 規則」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 이들 「規程」과 「規則」은 財務部의 主導하에 마련된 法令으로서의 性格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우리 會計學徒들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비록 法的 強制力を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같은 行政機關인 財務部에서 마련한 會計行為의 指針으로서 「企業會計原則」과 「財務諸表規則」이 있고, 이에 다시 그 體制나 內容에 있어서 이들과 다름이 없는 「上場法人등의 會計處理에 관한 規程」 및 「上場法人등의 財務諸表에 관한 規則」이 名稱만을 달리하여 二重構造를 가지고 會計原則 및 規則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밖에도 商法에 의한 营業報告用 財務諸表와 上場法人的 報告用 財務諸表를 작성하는데 있어서도 稅法에 따라 法人稅法과 租稅 特別措置法이 정하는 要件을 充足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 같이 보면 業種別로 會計規則이 있는 경우에 이를 適用하여 財務諸表를 作成하여야 하는 問題가 나타난다.

以上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財務諸表는 國家權力에 의하여 法令指向의로 制定된 基準에 따라 財務諸表가 作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財務諸表 構成要素의 相異

우리나라의 財務諸表는 法令에 따라 그 性格을 달리하고 있다함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으나 이는 또한 法令에 따라 財務諸表를 構成하는 要素(報告書 및 情報)에 있어서도 統一性을 갖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全般的 財務諸表의 體系를 볼 때 우리나라와 美國의 財務諸表의 構成要素는 다음과 같은 相異點을 가지고 있다.

첫째, 美國의 會計慣行으로는 財務諸表의 構

成要素의 重要性에 따라 이를 区分하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나라의 일단 財務諸表로 규정한 뒤에는 構成要素가 동일한 重要性을 갖는 것으로
되어 있다. 즉 美國은 앞서 考察한 바와 같이
財務諸表를 構成하는 報告書와 情報의 範圍와
名稱이 명확하게 嚴密性을 가지고 提示되지 않
고 있으나 財務諸表를 構成하는 要素로서 일반
적으로 다음 5가지를 들고 있다.

① 貸借對照表(balance sheet), ② 損益 및 利
益剩餘金計算書(statement of income and retained
earnings), ③ 財政狀態變動表(statement of changes
in financial position), ④ 會計處理方針
의 說明(summary of accounting policies) 그리고
⑤ 財務諸表의 註釋(notes to financial statements).
그러나 財務諸表를 構成하는 내용으로서
이 밖에도 資本金과 剩餘金의 移動이 많은 때에는
資本金 및 剩餘金計算書(statement of changes
in shareholders' equity)가 작성되기도 한다.
또한 損益 및 利益剩餘會計算書도 損益計算書
(income statement)와 利益剩餘金計算書(statement
of retained earnings)로 区分하여 報告하는
경우도 있다. SEC의 1974年 規程에서는 Form
10-K에 追加的 情報(supplementary information)
를 公示할 것을 要求하고 있다.

以上과 같은 問題를 포함하여 財務諸表가 包括하는 範圍와 內容을 한층 구별하기 어렵게 하
고 있는 것은 이와 관련된 報告書를 總稱하여 年次報告書(annual report) 財務諸表 및 이와 關
聯된 財務的情報(the financial statements, along
with related financial information) 등의 用語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점이다. 이 같은 理由에서 인
지는 몰라도 近年 美國에서는 基本的 財務諸表
라는 用語를 비교적 자주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貸借對照表, 損益 및 利益剩餘金計算書, 그리고
財政狀態變動表를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APB, opinion No. 19). 이같이 볼 때 이들
報告書 이외의 情報, 例컨대 會計處理方針, 財務諸表의 註釋 등은 基本的 財務諸表에 부수되
는 필요불가결한 一部(integral part)가 된다.
(APB Statement No. 4, "Basic Concepts and
Accounting Principles Underlying Financial
Statements of Business Enterprises, AICPA,

1970, Par. 10.)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에서 규정하고 있는 財務
諸表는 이를 構成하는 財務上의 報告書 名稱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그것이 包括하는 內容에 있
어서도 明明白白하다. 이 같은 점에서 報告하는
產業의 業種에 따라 사용할 用語 및 報告書에
融通性과 彈力性이 缺如되어 財務諸表의 公表가
法令에 따라 形式에 그치는 수가 많아 그의 財
務的情報로서의 價值가 半減되는 경우가 없지
않을 것으로 본다.

둘째, 우리나라에서는 財務諸表의 하나로 되
어 있는 利益剩餘金計算書 또는 缺損金處理計算
書가 美國에서는 使用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經營者가 利益處分案이나 또는 缺損金處
分案을 작성하여 株主總會에 提出한 후 承認을
받는 制度가 美國에는 傳統的으로 存在하지 않
기 때문이다. 즉, 우리나라에는 株主에게 配當
金을 支給하기 위해서는 株主總會의 議決을 거
쳐 承認을 받아야 하나 美國에는 利益處分의 權
限이 理事會(board of directors)에 있기 때문에
그 期에 나타난 利益剩餘金의 處分額은 그 期의
利益剩餘金計算書에 記載되기 때문에 별도로 利
益剩餘金處分計算書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세째, 財政狀態變動表에 관한 問題다. 美國에
서는 財政狀態變動表를 基本的 財務諸表의 하나
로 포함시키고 있는데 대해서 우리나라의 이
를 財務諸表 附屬明細書의 하나로 列舉하고 있
다.

오늘날 美國에서 基本的 財務諸表의 하나로
포함시키고 있는 財政狀態變動表의 원초적 형태
는 지금으로부터 約 100年前부터 會計實務에서
使用되어(L.S. Rosen and D.T. Decoster, "Fund
s' Statements: Historical Perspective," Accoun
ting Review, Jan. 1969, p. 126) 1903年까지는
적어도 4種의 類型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現金, 當座資產, 運轉資本 및 모든 財務의 活
動의 变動 등을 集計한 計算書의 4 類型이 그것
이다.

1908年부터 1921年까지 출판한 4가지 會計學
教科書에서 William Morse Cole은 貸借對照表
全計定의 變動을 집약하여 만든 計算書를 例示
하므로써 이에 관한 研究의 바탕을 이룩한 뒤

H.A. Finney에 의하여 1920年代에 많은發展을 보게 되었다. 즉 Finney는 運轉資本의 变動원인을 표시함으로써 流動性에 焦點을 마친 報告書作成에 박차를 가하였던 것이다. 2次大戰 후에는 期初 및 期末의 貸借對照表日에 運轉資本變動總額을 計算하고 資金의 實際 流動을 測定하려는 試圖가 이루어 졌다. (Colin Park and John W. Gladson, Working Capital, New York: Macmillan Company, 1963). 이로부터 資金흐름(fund flow)에 관한 報告書를 財務諸表와 관계하여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에 관한 論議가 끈질기게 臺頭되었다. 첫째의 見解는 損益計算書와 貸借對照表는 財務諸表의 기본이 되는데 대해서 資金運用表는 補足的 資料(supplementary schedule)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見解이다. 둘째 見解는 資金運用表는 貸借對照表와 損益計算書 등 종래에 基本的 財務諸表와 同列에 놓을 수 있을 정도로 重要한 報告書로서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셋째의 見解는 資金運用表는 短期貸借對照表나 損益計算書上の 活動資料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基本的 貢務諸表가 된다는 것이다.

1971年 3月 美國公認會計士會의 會計原則審議會(APB)는 1963年 이후 「資金의 源泉 및 使用에 관한 報告書」(The Statement of Source and Application of Funds)란 名稱으로 사용해 오던 資金運用表를 「財政狀態變動表」(Statement of Changes in Financial Position)로 바꿔 쓸것을 勸告하는 한편 이를 基本的 貢務諸表의 하나로 포함시켰던 것이다. 따라서 1971年 9月 30日 이후에 終了하는 會計年度에는 株主에 대한 年次報告書에 이를 公表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消極的으로나마 資金運用表를 처음 會計基準에 삽입시킨 규정은 1974年 7月에 制定한 「上場法人등의 會計處理에 관한 規程」에서 찾아 볼 수 있다. 本 規程 第 4條에서는 財務諸表의 하나로서 각 附屬明細書를 제시하고 未處分利益剩餘金計算書 製造原價明細書와 아울러 資金運用表를 각 附屬明細書로 작성할 것을 規定하였다. 이에 따라 「上場法人등의 貢務諸表에 관한 規則」에서는 資金運用表의 書式만

을 提示하고 있을 뿐이다.

書式 第43號로 例示된 資金運用表를 分析해 보면 우선 資金의 概念을 運轉資本(working capital)으로 理解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運轉資本概念으로서의 資金運用表를 작성하면 現金概念으로서의 資金運用表를 작성할 때에 비하여 너무나 細部的인 문제에 구애받지 않고 流動資產과 流動負債相互間에 나타난 去來 이외의 중요한 去來만을 集中的으로 分析한다고 하는 長點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너무나 많은 重大한 去來가 은폐되어 상세한 内容을 알 수 없는 短點도 있다. 예를 들면 短期銀行借入金으로 在庫資產을 增加시킨 去來는 資金의 純運轉資本概念下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證券을 發行한다든가 또는 어떤 財產과 交換으로 다른 財產을 取得하는 去來 그리고 長期負債를 普通株로 轉換한다든가, 또는 優先株를 普通株로 轉換시킨 것과 같은 去來도 이에는 表示되지 않는다. 이들은 모두 運轉資本에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된다는 점이다.

運轉資本概念으로서의 資金運用表는 이같은 短點이 있기 때문에 美國에서는 이를 非資金去來를 財政狀態變動表에 적절히反映해야 할 것을 권하고 있다(APB opinion No. 19, 1971, March).

네째, 韓美間 貢務諸表 構成要素의 또 다른 差異點은 美國에서는 會計處理方針(accounting policies)의 要約과 貢務諸表의 註釋(footnotes to financial statements)은 비록 基本的 貢務諸表는 아니라 하더라도 貢務諸表에 필요불가결한 要素(an integral part)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APB Statement No. 4, 1970, Par. 10 및 APB opinion No. 22, Disclosure of Accounting Policies, 1972). 사실 貢務諸表의 利用者들이 貢務諸表로부터 價值 있는 情報를 얻기 위해서는 貢務諸表作成時에 채택한 重要한 會計處理方針과 註釋·註記를 통한 상세한 내용을 알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近年에는 貸借對照表作成日 이후에 발생한 事項(subsequent events)도 註記·註釋으로 公表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會計處理方針과 貢務諸表의 註釋·註記事項을 會計處理의 基準에서 個別的으로 지시하고 있으나 이들을 強調하는 面에 있어서는

美國보다 弱하다. 즉 이들을 財務諸表의 一部로 보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그대신 우리나라 報告會社의 該當事項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관계된 附屬明細書를 公表하도록 하고 있다.

(4) 財務諸表에 의한 報告樣式 및 方法의 相異

美國과 우리나라의 財務諸表의 報告樣式 및 報告方法에 있어서도 많은 差異點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差異가 나타나는 理由의 대부분은 美國과 우리나라의 會計基準 및 會計慣行上의 差異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財務諸表의 各報告書別로 나타나는 差異點은 各報告書別로 설명할 때 記述하도록 하고 이곳에서는 全般的持徵에 관해서만 考察하기로 한다.

첫째, 財務諸表의 樣式·區分·科目的 選擇과 配列에 있어서 差異點이 있다.

美國의 財務諸表에는 우리의 財務諸表와 比較해 볼 때 唯一한 表示方法이 없고 일반적으로 簡潔하고 一覽性이 있으며 財務諸表는 彈力의이어서 財務諸表 利用者가 理解하기 쉽게 되어 있다는 것을 그 特徵으로 들 수 있다.

우선 財務諸表의 報告書式은 計定式(account form)과 計定式(report form)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오늘날 美國에서는一般的으로 採擇되는 報告書式으로 損益計算書에서는 報告式으로 그리고 貸借對照表는 計定式이 많이 쓰이나, 우리나라에서는 報告式과 計定式을 選擇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計定科目(title of account)은 業種에 따라 다른 計定科目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결코確定의이고 固定의이 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즉 報告하는 企業이 屬하는 產業에서 財務諸表利用者의 理解可能性을 考慮하여 目的適合한 用語를 自由로이 구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一般的으로 會計에서 사용하는 用語는 大衆이 理解하기 어려운 것이 많이 있다. 會計用語는相當한 識見이 있는 財務諸表의 利用者가 日常의으로 많이 사용하는 말을 구사하여야 할 것이다. 이같은 점에서 볼 때 美國의 財務諸表에 나타난 用語(計定科目을 포함하여)는 우리에 비하면 彈力의이고 融通性이 있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의 財務諸表에 관한 會計基準과 報告樣式 및 方法은一般的으로 商工業에서 使用할

것을 具體로 하여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商工業에서는 어느 程度 통용될 수 있는 基準 또는 報告方法이 되나 그밖의 產業, 例를 들면 金融業이나 그밖의 서서비스 產業에서는 이곳에서 例示하고 있는 報告樣式 및 方法을 그대로 따르기가 困難한 경우가 많다.

財務諸表에 表示된 金額에 注意를 集中시켜 보자. 우리의 財務諸表는 計定科目 및 合計金額이 小數點以下 2째자리까지 상세한 表示方法을 採擇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美國의 財務諸表는 거의 大部分이 千單位 以下은 零(zero)으로 表示하는 것이 오늘날의一般的 會計慣行으로 되어 있다. 이같은 傾向은 會計情報의 側面에서 바람직한 報告方法이라 생각된다. 사실 생 각컨대 投資者, 債權者 등 利害關係者の 입장에서 企業에 대한 상세한 情報보다는 大體的 傾向을 아는 것으로 滿足하는 경우가 많다. 오늘날 會計上 重要性의 概念은 意思決定에 影響을 미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에 초점을 마춰 判斷하게 된다는 점을 考慮에 두면 千單位 以下의 數值, 경우에 따라서는 그 以上的 數值도 財務諸表 利用者에 따라서는 중요치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

重要性의 會計基準은 計定科目에도 적용시켜 美國의 財務諸表에 나타난 計定科目數는 우리의 것에 비하여 簡潔하고 要約·表示된 것이 그 特徵이라고 하겠다. 「規則 S-X」의 一般規定에 의하면 어떤 項目에 포함되는 金額이 重要하지 않을 때에는 그 項目을 별도로 獨립하여 區分表示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떤 計定科目을 별도로 表示할 것인가 아니면 類似한 計定科目에 吸收시킬 것인가 하는 判斷基準에 관한 例를 보면 「기타 流動資產」이 當座資產을 포함하는 大項目(예를 들면 流動資產)의 5%, 또는 「기타 投資」項目이 總資產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當座資產의 名稱을 붙인 計定科目으로서 獨립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 「財務諸表規則」에서는 「기타의 流動資產」「關係會社等에 대한 債權」「기타의 有形固定資產」「기타의 無形固定資產」「外貨表示資產」「기타의 資產」등이 資產總額의 2%를 초과하면 區分하여 記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計定科

自己網羅의으로 列舉되는 경향이 있다. 이와類似한 會計處理基準은 負債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둘째로 美國의 財務諸表制度는 聯結財務諸表(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가 基本이 되는 것으로서 特徵지위지나, '우리는 이와 反對로 個別財務諸表가 財務諸表의 主軸을 이루고 있고 聯結財務諸表는 보편화 되어있지 않다. 비록 聯結財務諸表를 作成한다 하더라도 個別財務諸表의 附屬書類로서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上場法人등의 會計處理에 관한 規程」第5條).

聯結會計制度가 나타난 것은 經濟社會의 变遷에 따른 投資者的 要求 및 稅法 등의 要請에 의한 것이다. G.O. May에 의하면 美國에서 聯結會計를 처음으로 試圖한 會社는 1886年の The American Cotton Oil Trust라고 하나(M.E. Peloubet,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Accounting," *Modern Accounting Theory*, edited by Morton Backer, N.J. Prentice-Hall, Inc. 1966, p. 23) 최초의 現代적 聯結財務諸表를 年次報告書로 作成하기 시작한 會社는 1902年の United States Steel Corporation이었다. 그뒤에 企業集團化 현상이 두드러지게 進行되고 또 第1次世界大戰 후 필요한豫算을 確保하고자 1917年 內國稅入委員會(Commissioner of Internal Revenue)가 입안한 超過利潤稅(excessprofit tax)制를 채택하면서 企業은 聯結申告書(consolidate returns)를 제출하게 되었다. 오늘날 美國의 聯結會計制度는 1933年の 證券法과 1934年の 證券去來法에 따라 上場會社가 證券去來委員會(SEC)에 제출하는 會計報告書에 聯結財務諸表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그 内容에 관해서는 SEC의 「規則 S-X」를 따르도록 되어 있다.

오늘날 美國에서 父子會社의 企業集團이 營業活動을 하는 경우에 支配會社(父會社)만의 個別財務諸表는 일종의 事業部門 財務諸表로서 밖에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이 通念으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聯結會計問題가 1970年代 初期까지만 해도 거의 거론되지 않았으나 經濟開發 5個年計劃이 成功的으로 추진되면서 企業의

集團化현상이 多數의 財閥企業을 탄생케 하여, 支配會社의 個別財務諸表만으로는 企業의 올바른 情報를 파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課稅上에도 여러가지 問題點이 있어 초보적인 조치이긴 하나 1974年に 「上場法人등의 會計處理에 관한 規程」과 1975年の 「上場法人등의 財務諸表에 관한 規則」을 제정하여, 1976年 1月 1日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會計年度로부터 실시하게 되었다. 그 뒤에 改正된 「企業會計原則」과 「財務諸表規則」에서 聯結會計制度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聯結財務諸表와 아울러 또 다른 差異點은 美國에서는 比較財務諸表(comparative financial statements)가 일반적으로 작성된다는 점이다. 즉 ARB No. 43에서는 比較財務諸表의 作成을 勸告하고 있다.

3. 貸借對照表

앞에서는 財務諸表의 報告樣式과 方法에 관한 美國會計實務의一般的類型을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基本的 財務諸表에 포함되는 모든 報告書가 共通의으로 갖는 特徵에 局限시켰다. 이하에서는 各 財務報告書의 하나 하나에 대해서 特徵의인 면을 考察하기로 한다.

(1) 貸借對照表의 報告形式

美國企業의 財政狀態를 報告하는 形式에는 統一된 特定의 형식이 없으며 그 報告內容에 있어서는 簡潔한 뿐만 아니라 一貫性이 있도록 되어 있는 점이 特徵이다.

美國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貸借對照表의 形式은 Customary form이다. Customary form은 資產 = 負債 + 資本의 貸借對照表等式으로 表示되는 형식을 말하며 우리나라의 計定式에 해당하는 報告樣式이다. 이밖에도 企業의 財政狀態를 報告하는 形式에는 報告式으로 流動資產 - 流動負債 + 固定資產 - 固定負債 = 資本의 等式에 따라 報告하는 形式도 있다. 이것은 우선 流動資產에서 流動負債를 差減하여 純運轉資本(net working capital)을 明示하고, 이에 固定資產을 加算하고 다시 固定負債를 差減한 것이 資本과 같은 것이 된다는 形式을 취한 것으로서 純運轉資本의 報告에 중점을 둔 報告形式이 된다. 이

Balance Sheet

as of Dec. 31, 19+1

| Assets | | Liabilities and Owners' Equity | |
|----------------|-----------------|--------------------------------|-----------------|
| Current Assets | \$ × × × | Current Liabilities | \$ × × × |
| Investments | × × × | Long-term Debt | × × × |
| Property | × × × | Other long-term Liabilities | × × × |
| Other Assets | × × × | Shareholders' Equity | × × × |
| Total | <u>\$ × × ×</u> | Total | <u>\$ × × ×</u> |

같은 報告形式을 택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資產・負債・資本의 配列은 보통 위와 같은 方法을 사용한다.

貸借對照表에서 資產・負債의 配列方法은 우리나라와 같이 流動性配列法(current arrangement)을 따르고 있으나 資產・負債의 流動項目과 固定項目의 分類는 一年基準(one year rule)과 正常營業循環基準(normal operating cycle concept)을 비교하여 어느 것이든 긴것을 基準으로 삼는다. 一年基準을 택하는 경우 債權・債務가 流動項目으로 分類되는 경우에는 財務諸表에 Footnote로서 이를 적절히 公表하여야 한다.

(2) 資產・負債의 分類와 内容

美國에서의 資產・負債는 美國에서 일반적으로 認定된 會計原則에 따라 計上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企業의 貸借對照表上에 記載되는 資產・負債의 種類와 内容은多少간의 차이가 있다.

우선 앞에서 본 貸借對照表의 構成項目에 관해서 그 内容을 구체적으로 分類한 例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流動資產(current assets)

現金(cash)

市場性 있는 有價證券(marketable securities)

受取債權(receivables)

在庫資產(inventories)

先給費用 및 기타 流動資產(prepayments and other current assets)

2) 投資(investments)

投資 및 先給金(investments and advances)

投資 및 非流動債權(investments and non-current receivables)

이곳에서는 다음의 諸計定을 포함한다.

① 持分法의 適用對象이 되는 關係會社(affiliates)株式에의 投資, 貸與金(loans) 및 先

給金(advances)

② 기타 價有證券에의 投資(other security investments)

③ 기타 投資(other investments) 및 非流動債權(non current receivables)

기타 投資에는 ① 長期貸與金 ② 預金 및 有價證券으로 特定目的을 위해서 留保되어 있는 것 ③ 任員, 從業員, 主要株主 등에 대한 貸與金과 그밖의 債權

3) 固定資產(property, plant and equipment)

① 土地(land) ② 建物(building) ③ 機械裝置 및 備品(merchinery and equipment) ④ 建設假計定(construction in progress) ⑤ 減價償却充當金(accumulated depreciation)으로 區分하여 表示하고 있다.

이밖에도 「規則 S-X」에 의하면 Leaseholds 도 이 分類에 포함된다. 이밖에도 鎳業權等 有形物에 대한 權利도 Property에 포함시켜 이에 鎳物探掘權(mineral rights), 地下埋藏物(mineral properties)등으로 表示한다.

4) 其他資產(other assets)

이 區分에 포함되는 資產은 앞에서 본 流動資產・投資・固定資產 등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서 이에는 ① 위의 property에 포함되지 않은 無形資產으로서 例를 들면 特許權(patent), 商標權(trade marks), 技術契約料(technical license), ② 稼延費用(deferred charges), ③ 其他項目으로 되어 있다.

負債는 項目別로 대략 다음과 같은 區分에 따라 細部的 計定科目이 配列된다.

5) 流動負債(current liabilities)

銀行借入金(bank loans)

一年以内返済豫定 長期借入金(current maturities of long-term debt)

支給債務(payables)

未支給費用(accrued expenses)

從業員貯蓄預金(employees' savings deposits)

기타의 流動負債(other current liabilities)

6) 長期債務(long-term debt)

이의 內容은 複雜하여 그 全部를 貸借對照表에서 上세하게 說明할 수 없으므로 上세한 설명은 註記 또는 註釋으로 이투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에는 대략 다음과 같이 分類・表示한다.

① 社債・長期借入金(發行別 또는 借入別)

② 關係會社長期債務

③ 그밖의 固定債務

위의 ①~③에 대해서는 利子率을 포함한一般的條件, 返済期限, 轉換權付인 경우에는 그 基準, 貸借對照表日 이후 5年間의 各年度의 返済豫定額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 밖에 長期債務에 提供된 擔保資產을 표시하여야 한다.

7) 其他의 長期負債(other long-term liabilities)

이 區分에 속하는 長期負債로서 중요한 것은 從業員退職給與充當金(liabilities for employees' severance payments)과 移延稅金(deferred income taxes) 등이 있다.

以上에서 說明한 것 이외에 負債項目에 속하는 것으로는 偶發債務(contingent liabilities)와 契約債務(commitments)라는 것이 있다. 이들에 관해서는 財務諸表 註記 또는 註釋으로 그 내용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8) 資本은 美國의 경우 株式會社에 대해서는 Stockholders' Equity(株主持分)란 말로 표현하며 그 構成은 ① 資本金(capital stock) ② 資本剩餘金(capital surplus) ③ 留保利益(retained earnings)으로 되어 있다.

資本金(capital stock)

이곳에는 ① 株式의 名稱(common stock 또는 preferred stock 등) ② 額面, 無額面의 差別 및 發行價格 "\$50 par" 등 ③ 授權株數(number of shares authorized) ④ 發行済株式數 및 現在數(number of shares issued and outstanding) ⑤ 株式發行債務(capital share liabilities) — 轉換社債의 轉換에 대한

留保株의 說明 등 표시가 貸借對照表 또는 財務諸表 註記 및 註釋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또한 自己株式(treasury stock)은 企業의 資產이 아니고 資本으로부터의 控除項目으로 취급된다. 自己株式의 取得原價는 資本金, 資本剩餘金, 利益剩餘金의 合計金額에서 공제하여 資本의 마지막 段階에서 표시한다.

資本剩餘金(capital surplus)

「規則 S-X」는 資本剩餘金을 ① 額面超過金 또는 納入剩餘金(paid in surplus)과 ② 기타 資本剩餘金(other capital surplus)으로 구분표시할 것을 要求하고 있다. 美國公認會計士會(AICPA)의 用語委員會(Committee on Terminology)는 資本剩餘金을 貸借對照表에 표시할 때 "Capital Surplus"라는 말을 피하고 그 대신 資本剩餘金의 發生原因을 설명하는 형식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 권고에 따라 額面超過金을 "additional capital" 또는 "capital in excess of par value"로 표시하는 예가 많다.

留保利益(retained earning)

우리 나라의 利益剩餘金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規則 S-X」에서는 이를 既處分(appropriated)의 것과 未處分(unappropriated)의 것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것을 要求하고 있다. 또한 配當制限이 있는 경우에는 ① 制限理由, ② 制限條項 ③ 制限金額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留保利益은 종래 利益剩餘金(earned surplus)란 말로 사용되었으나 AICPA의 用語委員會의 勸告에 따라 이 用語 대신에 留保利益(retained earnings)이란 말이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게 되었다.

우리 나라와 比較하여 美國의 貸借對照表에 計上되는 項目에 차이점이 있는 것이 많으나 特히 그중에서 重要한 것을 들면 다음과 같다.

① 美國의 貸借對照表에는 稅效果會計上 認識되는 移延稅金(deferred income taxes)과 一定條件下의 리스資產(leased assets) 등이 貸借對照表에 計上되나 우리나라에서는 商法上의 制約으로 인하여 認定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② 美國에서는 父會社, 子會社, 持分法의 對象이 되는 關係會社(affiliates), 主要株主, 任員

(officers), 從業員(employees) 등에 대한 債權·債務을 일반의 債權·債務과 구분하도록 되어 있다.

③ 試驗研究費 및 開發費(research and development costs)의 會計에 관한 FASB Statement 第2號가 公表된 후 美國에서는 1975年 1月 1日

以後에 개시되는 事業年度부터 試驗研究費 및 開發費의 資產計上은 일체 인정하지 않기로 되었다.

美國 Allegheny Ludlum Industries Inc.의 1975年末 決算報告書에 나타난 聯結貸借對照表를 例示하면 다음과 같다.

Consolidated Balance Sheets

December 31, 1975 and 1974

Assets

| | 1975 | 1974 |
|---|-------------------|-------------------|
| | (In thousands) | |
| Current assets: | | |
| Cash..... | \$ 7,126 | \$ 5,091 |
| Notes and accounts receivable—trade, less allowance for doubtful accounts of \$ 1,580,000 in 1975 and \$ 1,935,000 in 1974 | 92,563 | 131,015 |
| Sundry notes and account receivable | 1,413 | 1,503 |
| Inventories (Note 3) | 206,443 | 226,161 |
| Prepaid expenses | <u>17,763</u> | <u>15,149</u> |
| Total current assets | <u>325,308</u> | <u>378,919</u> |
| Investments in and advances to unconsolidated subsidiaries and affiliated companies, at equity..... | 55,902 | 41,199 |
|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at cost: | | |
| Land | 5,633 | 4,750 |
| Buildings | 113,349 | 104,505 |
| Machinery and equipment | <u>430,969</u> | <u>407,021</u> |
| Less Accumulated depreciation..... | 549,951 | 516,276 |
| | <u>298,176</u> | <u>282,860</u> |
| | <u>251,775</u> | <u>233,416</u> |
| Cost of businesses in excess of net assets acquired, less accumulated amortization (Note 2) | 2,210 | 1,431 |
| Other assets..... | <u>3,069</u> | <u>1,325</u> |
| | <u>\$ 638,264</u> | <u>\$ 656,290</u> |

Liabilities and Shareholders' Equity

Current liabilities:

| | | |
|--|----------------|----------------|
| Notes payable, including \$ 19,500,000 commercial paper in 1975..... | \$ 20,689 | \$ 20,000 |
| Current portion of long-term debt (Note 4) | 10,232 | 6,524 |
| Accounts payable..... | 43,069 | 77,157 |
| Payrolls and employee benefits | 48,316 | 44,961 |
| Other accrued expenses..... | 12,874 | 18,812 |
| Federal income taxes..... | <u>5,818</u> | <u>16,092</u> |
| Total current liabilities | <u>140,998</u> | <u>183,546</u> |
| Long-term debt (Note 4) | 139,699 | 133,215 |
| Other long-term liabilities | 9,105 | 10,821 |

| | | |
|--|-------------------|-------------------|
| Deferred income taxes | 28,592 | 24,261 |
| Shareholders' equity: | | |
| Capital stock (Notes 5 and 6): | | |
| \$ 3.00 Convertible Preferred Stock (involuntary liquidation value \$ 121,018,000 at December 31, 1975) | 2,017 | 2,017 |
| Common Stock | 4,789 | 4,788 |
| Additional paid-in capital | 83,638 | 83,627 |
| Retained earnings(Notes 4 and 9)..... | <u>229,426</u> | <u>214,015</u> |
| | 319,870 | 304,447 |
| | <u>\$ 638,264</u> | <u>\$ 656,290</u> |

See notes to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4. 損益 및 利益剩餘金計算書

(1) 損益計算書의 特徵과 報告形式

美國의 損益計算書는 이에 利益剩餘金計算書를 결합시켜 損益 및 利益剩餘金計算書(statement of income and retained earnings)를 作成하는 것이 常例라 함은前述한 바와 같다. 즉 美國에서는 期中의 利益剩餘金의 变동이 복잡하지 않은 한 損益計算書와 期中의 剩餘金去來를 표시한 損益 및 利益剩餘金計算書를 작성한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나라의 損益計算書와 利益剩餘金計算書가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美國의 損益計算書는 財務諸表가 共通的인 特徵을 갖는 聯結計算書, 前年實績과의 比較形式을 취하고 있는 점 등 이외에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損益計算書의 形式은 區分損益計算書(multiple-step income statement)을 따르지 않고 単一區分 損益計算書(single-step income statement)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 一般的이란 점이다.

우리나라의 「企業會計原則」에서 損益計算書는 ①營業損益計算 ②經常損益計算 ③純損益計算의 구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같은 樣式的의 損益計算은 우리나라에서는 常識化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 美國에서는 대부분이 이와 같은 區分을 하지 않고 總收益과 總費用의 차액으로서當期純利益을 표시하는 単一區分 損益計算書를 작성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 후술하는 特別損益項目(extraordinary items)은 總收益과 總費用에서 제외된다.

美國에서 単一區分 損益計算書를 많이 사용하는 理由는 무엇이 企業의 經常去來인가 하는 것을 구분하기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이를 구분하게 되면 損益計算者 利用者들에게 오히려 誤解를 초래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즉, 企業의 活動은 모두 営業活動이며 總收益은 總費用에 對應하는 것으로 보고 利益을 생각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둘째로, 美國의 損益計算書는 貸借對照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것에 비하면 매우 簡潔하고 重點的인 表示만 하여 財務諸表의 利用者에게 효과적으로 情報를 전달할 수 있도록 考案되어 있다. 純賣出額(net sales)에서 純利益(net income)에 이르는 計算過程은 간단하다. 例로서 賣出原價(cost of goods sold)와 販賣費와 一般管理費 등의 明細를 損益計算書에 表示하는 일은 별로 많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附屬書類를 利用한다. 그러나 重要한 項目, 예를 들면 試驗研究費, 減價償却費, 勞務費, royalty 등에 대해서는 구분표시한다.

셋째로 美國의 損益計算書에서는 異常項目(extraordinary items)과 前期損益修正(prior period adjustments)에 관한 표시가 중시되는 동시에 一株當利益(earnings per share)를 損益計算書末尾에 표시하는 것이 慣例로 되어 있다.

넷째로 損益計算書에도 貸借對照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財務諸表의 註記 또는 註釋으로 損益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도록 되어 있다. 例를 들면 ①收益·費用의 認識과 測定에 관한 중요한 會計方針 ②退職給與 및 年金制度上의 年間總經費 ③貸借料 ④換差損益의 總

額 등이다.

다섯째 美國의 損益計算書에는 利益剩餘金計算書가 損益計算書下段에 當期純利益에 연결되어 表示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작성되는 利益剩餘金 處分計算書는 별도로 작성되지 않는다. 이것은 美國에서는 利益剩餘金의 處分權限이 理事會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損益 및 剩餘金結合計算書(combined statement of income and retained earnings)에 각事業年度末의 剩餘金處分項目이 반영되어 있어 별도의 利益剩餘金處分을 表示하는 報告書를 작성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利益剩餘金의 處分項目으로서 任員賞與金이 포함되어 있으나 美國에서는 이를 剩餘金의 初分항목으로서가 아니라 一般管理費의 項目에서 처리되므로 社外로 流出되는 剩餘金의 處分項目으로서는 사실상 配當金 이외에는 없는 것이 또 하나의 特徵의인 면이다.

大略 위와 같은 特徵을 갖는 美國의 損益計算書는 다음과 같은 形式으로 표시된다.

Statement of Income and Retained Earnings.

| | |
|------------------------------------|-------|
| Revenues | × × × |
| Costs and expenses..... | × × × |
| Net income | × × × |
| Retained earnings at beginning ... | × × × |
| Total | × × × |
| Appropriation | × × × |
| Retained earnings at end..... | × × × |
| Earnings per share | × × × |

(2) 收益・費用의 分類와 內容

① 收益(Revenues)

收益은 크게 營業收益(operating revenue)와 營業外收益(other revenue)로 구분할 수 있는데 商工企業의 營業收益은 純賣出額(net sales)에서 記載한다. 純賣出額은 總賣出額(gross sales)에서 賣出額・還入品額・割引額(sales allowance returns and discounts)를 差減하여 記入하나, 報告書에는 特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純賣出額만을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賣出割引(sales discount)이 營業外費用으로 취급되고 있으나 美國에서는 純賣出額을

計算할 때의 控除項目으로 하고 있다.

營業外收益은 本來의 營業活動이외의 활동으로부터 나타나는 收益으로서 「規則 S-X」에 의하면 이는 대략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受入配當金(dividend income), 受入利子(interest income), 有價證券處分益(profit on securities), 雜收益(miscellaneous other revenue) 등과 이밖에도 關係會社利益에 대한 持分(equity in earnings of associated companies), royalties, 固定資產處分益(gains on disposal of properties, 換差益(exchange gains) 등은 收益項目에 구체적 内容을 표시하는 表題와 함께 掲記한다.

② 原價 및 費用(costs and expenses)

이는 賣出原價(cost of goods sold), 販賣費와 一般管理費(selling and general administrative expense), 法人稅(income taxes) 其他費用(other expenses) 등으로 構成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賣出原價는 損益計算書上에 그의 計算過程을 表示하나 美國의 경우에는 이를 總括的으로 表示하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製造企業에서 製造原價報告書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는 製造原價報告書는 財務諸表 附屬明細書의 중요한 書類로 취급된다. 「規則 S-X」에서는 原價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表示要件을 定하고 있다.

- ① 賣出原價와 營業費用을 區分・表示할 것
- ② 營業費用은 父會社, 子會社間의 用役의 提供 및 購入을 별도로 表示할 것
- ③ 賣出原價를 決定하기 위하여 사용한 期初・期末의 在庫額을 表示할 것.

그리고 購入割引은 우리나라에서는 受入利子와 마찬가지로 財務收益(營業外收益)으로 表示하나 美國에서는 純買入額을 決定하기 위하여 總買入額으로부터의 控除項目이다.

販賣費와 一般管理費는 우리나라와 같이 그 內譯을 모두 표시하지 않고 總額으로 표시하되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項目에 대해서만은 구분・표시하는 것이 보통이다. 例로서 減價償却費, 試驗研究費, 廣告宣傳費 등이 그것이다.

營業外費用은 社債(bond)・抵當權附 借入金(mortgage payable) 및 이와 유사한 債務에 대

한支給利子, 社債發行費(debt expenses)의 債却額, 有價證券處分額(losses on securities), 固定資產處分損(loss from disposal of properties), 換差損(exchange losses)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구분 표시하든가 其他費用(other expence)으로 總括表示하든가 한다.

다음으로企業의所得稅(income taxes)는法人의所得에 대하여賦課되는稅金으로서費用이란觀點에서 오래전부터損益計算書의 중요한獨立科目을 이루고 있었다. 이같은稅金費用은

- ①法定稅率(statutory tax rate)과損益計算書上의實效稅率(effective tax rate)과의差가큰경우
- ②法人稅등의稅金總額에 대하여稅效果調整額(income taxes-deferred)의率이높은경우에는각각의理由를財務諸表註記로설명할필요가있다.

③ 異常項目(extra-ordinary items)

美國의 損益計算書도 우리나라와 같이 包括主義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損益計算書에 Extra-ordinary gain 및 Extra-ordinary loss를 위에서 설명한 收益·費用과는 별도로 이를 區分表示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非經營項目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方法으로 표시한다.

Net income before extra-ordinary items

Consolidated Statements of Earnings and Retained Earnings

Years ended December 31, 1975 and 1974

| | 1975 | 1974 |
|---|----------------|----------------|
| | (In thousands) | |
| Net sales | \$ 791,982 | \$ 981,924 |
| Equity in net earnings of unconsolidated subsidiaries and affiliated companies... | 9,969 | 6,668 |
| Other income, net..... | <u>3,918</u> | <u>6,562</u> |
| | <u>805,869</u> | <u>995,154</u> |
| Costs and expenses: | | |
| Cost of goods sold..... | 657,492 | 817,289 |
| Depreciation | 20,062 | 18,644 |
| Selling, general and administrative expenses | 67,685 | 62,702 |
| Interest expense..... | <u>13,720</u> | <u>14,979</u> |
| | <u>758,959</u> | <u>913,614</u> |
| Earnings before income taxes | 46,910 | 81,540 |
| Income, taxes (Note 9) | <u>16,829</u> | <u>36,469</u> |
| Net earnings | 30,081 | 45,071 |

| | |
|----------------------------|--------------|
| | X X X |
| Extra-ordinary items | <u>X X X</u> |
| Net income | X X X |

美國에서 非經常項目에 속하는 것으로는 그의
발생이 異常한(unusual) 性質을 가지고 있으며,
또 희귀하게 발생(infrequency of their occurrence)
되기 때문에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는 事象
(events)이나 去來이다(APB opinion No. 30).

이와 관련하여 前期損益修正項目(prior period adjustment)으로서 本期의 損益으로 認識할 수 있는 것은 다음의 條件이 갖추어진 것이어야 한다.

- ① 過去의 특정 年度와 簡接 관련이 있을 것
- ② 過年度의 貸借對照表日 이후에 발생한 經濟的事象에 原因을 돌릴 수 없는 것
- ③ 經營者이 외의 사람에 의한 決定에 依存하고 있을 것
- ④ 當當時에 合理的推定을 할 수 없었던 것 등을 들 수 있다.

④ 一株當利益 (earnings per share)

美國의 損益計算書에서 特別히 強調하고 있는 것은 株當利益이다. 이는 美國의 公表損益計算書에는 거의例外없이 表示되고 있다.

Allegheny Ludlum Industries, Inc.의 1975년
末에 끝나는 聯結損益 및 利益剩余金計算書를
例示하면 다음과 같다.

| | | |
|--|------------|------------|
| Retained earnings at beginning of year | 214,015 | 182,854 |
| | 244,096 | 227,925 |
| Deduct: | | |
| Dividends: | | |
| On \$ 3.00 Convertible Preferred Stock— \$ 3.00 per share..... | 6,051 | 6,051 |
| On Common Stock— \$ 1.80 per share in 1975 and \$ 1.50 in 1974 | 8,619 | 7,174 |
| Deficit, as of beginning of 1974, of pooled companies acquired in 1974 | — | 685 |
| | 14,670 | 13,910 |
| Retained earnings at end of year..... | \$ 229,426 | \$ 214,015 |
| Earnings per share of common stock: | | |
| Primary | \$ 5.02 | \$ 8.15 |
| Fully diluted | \$ 4.35 | \$ 6.53 |

See notes to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5. 財政狀態變動表

(1) 財政狀態變動表의 形式

財政狀態變動表는 一定事業年度의 企業資金의 調達 및 그 運用狀況을 要約하여 財政狀態의 变동을 公開할 목적으로 작성된 報告書로서 美國에서는 일찍이 今世紀初로부터 論議되었으나 이 것이 企業이 基本的 財務諸表의 하나가 된 것은 1971年 以後의 일이다.

財政狀態變動表를 작성하는데 先行해서 定義되어야 할 것이 資金(fund) 概念인데, 이에는 資金을 ① 現金 預金 또는 이것과 等價物(例컨대 市場性 있는 有價證券)로 해석하는 見解 ② 運轉資本(working capital) 즉 流動資產에서 流動負債를 控除한 残額으로 해석하는 전解 등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運轉資本으로서의 資金概念이 널리 쓰이고 있다. 또한 財政狀態의 變動이란 事業年度中에 발생한 貸借對照表項目에 대한 모든 變動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하기도 한다.

財政狀態變動表의 형식은 2部分으로 構成되어

있다. 그 하나는 運轉資本의 要素別 增減明細(changes in components of working capital)이며, 다른 한 부분은 運轉資本의 源泉과 使用(sources and application of working capital)을 표시하는 部分이다. 우리나라 財務諸表 附屬明細書의 하나로 제시하도록 되어 있는 資金運用表도 美國의 運轉資本의 源泉과 使用에 해당하는 것과, 첫번째 部分인 運轉資本의 要素別 增減明細가 資金運用表에 포함되어 이를 總稱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運轉資本의 要素別 增減明細는 貸借對照表의 流動資產 및 流動負債部分의 增減을 比較要約하여 作成한다.

運轉資本의 源泉과 使用을 나타낸 표는 運轉資本의 增加要因으로서의 資金源泉과 減少要因으로서의 使用을 對比하여 運轉資本의 增加 또는 減少가 나타나게 된 경위를 會計數值로 대비하여 表示하는 형식을 이루고 있다.

1975년의 Allegheny Ludlum Industries Inc.의 財政狀態變動表를 例示하면 다음과 같다.

Consolidated Statements of Changes in Financial Position

Years ended December 31, 1975 and 1974

Source of funds:

From operations:

| | 1975 | 1974 |
|----------------|------|------|
| (In thousands) | | |

| | | |
|--------------------|-----------|-----------|
| Net earnings | \$ 30,081 | \$ 45,071 |
|--------------------|-----------|-----------|



| | | |
|--|--------------------|------------------|
| Items not requiring funds: | | |
| Depreciation | 20,062 | 18,644 |
| Replacement items consumed in production | 10,866 | 12,936 |
| Increase in other long-term liabilities | 7,179 | 9,010 |
| Deferred income taxes | 4,118 | 3,076 |
| Equity in net earnings of unconsolidated subsidiaries and affiliated companies | (9,969) | (6,668) |
| Funds provided from operations | 62,337 | 82,069 |
| From long-term borrowings | 1,209 | 1,323 |
| Long-term debt issued and assumed in connection with acquisitions | 20,271 | — |
| Other, net | 769 | 2,146 |
| | <u>84,586</u> | <u>85,538</u> |
| Use of funds: | | |
| Capital expenditures..... | 23,397 | 28,811 |
| Replacement items purchased | 10,954 | 16,189 |
| Dividends..... | 14,670 | 13,225 |
| Non-current assets of businesses acquired, including \$ 16,071,000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 19,764 | — |
| Increase (reduction) in investments in and advances to unconsolidated subsidiaries and affiliated companies | 2,816 | (8,825) |
| Reduction of long-term debt..... | 14,996 | 7,345 |
| Reduction of other long-term liabilities..... | 9,052 | 7,348 |
| | <u>95,649</u> | <u>64,093</u> |
| Increase (Decrease) in working capital..... | <u>\$ (11,063)</u> | <u>\$ 21,445</u> |
| Changes in working capital: | | |
| Increase (Decrease) in current assets: | | |
| Cash | \$ 2,035 | \$ (3,956) |
| Trade and sundry receivables | (38,542) | 19,668 |
| Inventories | (19,718) | 41,095 |
| Prepaid expenses | 2,614 | 1,820 |
| | <u>(53,611)</u> | <u>58,627</u> |
| Increase (Decrease) in current liabilities: | | |
| Notes payable and current portion of long-term debt | 4,397 | (6,402) |
| Accounts payable | (34,088) | 27,534 |
| Payrolls and employee benefits and other accrued expenses | (2,583) | 18,537 |
| Federal income taxes | (10,274) | (2,487) |
| | <u>(42,548)</u> | <u>37,182</u> |
| Increase (Decrease) in working capital | <u>\$ (11,063)</u> | <u>\$ 21,445</u> |

See notes to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6. 財務諸表의 註記, 會計政策, 會計變動

財務諸表는 기업과 利害關係를 가지고 있는
者들에게 財政狀態 및 經營活動과 관련된 財務
的 情報를 傳達하는 기본적인 手段이 된다. 財

務諸表가 情報傳達手段으로서의 役割을 충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利害關係者들이 情報로서의
有用性을 갖는 諸般情報가 公表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 경우에 基本的 財務諸表외에도 이를
補充的으로 설명할 수 있는 註記(footnotes), 會

計政策(accounting policies) 및 會計變化(accounting changes)를 公表하면 財務諸表의 有用性은 輝선 增大된다.

우리 나라 「企業會計原則」에서도 美國과는 多少 差異가 있으나 財務諸表에는 필요한 註記 및 註釋을 하여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이것이 갖는 會計情報로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財務諸表規則」의 第5條 4의 「註記 및 註釋」을 보면, 「註記」는 財務諸表上의 該當科目 다음에 그 會計事實의 내용을 간단한 字句 또는 數字로 輜호안에 表示하는 것을 말하고, 註釋은 財務諸表上의 該當科目 또는 金額에 記號를 붙이고 構外 또는 別紙에 그 會計事實의 내용을 간결하게 記載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물론 우리나라의 「註記 및 註釋」이란 用語에는 美國에서 말하는 footnote, accounting policies 및 accounting changes에 해당하는 것이 모두 포함되는 뜻으로 넓게 해석할 수도 있으나 具體的인 문제에 들어가서는 技術的인 면에서 많은 차이점이 있다.

美國에서 公表되는 年次報告書에 나타나는 중요한 Footnotes를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財務諸表의 作成基準
- ② 主要한 會計方針의 說明
- ③ 非聯結 子會社와 그밖의 持分法의 對象이 되는 會社에 대한 投資 및 貸與金에 관한 情報
- ④ 長期借入債務의 明細
- ⑤ 擔保提供資產
- ⑥ 年金 및 從業員退職金制度
- ⑦ 所得稅等
- ⑧ 資本金 및 資本剩餘金의 期中變動
- ⑨ 利益剩餘金의 配當利用可能性에 대한 制限事項
- ⑩ 換差損益
- ⑪ 리스義務와 賃借料(lease commitments and rental expense)
- ⑫ 契約債務 및 偶發債務(commitments and contingent liabilities)
- ⑬ 後發事象(subsequent events)

美國의 年次會計報告書에는 중요한 會計方針을 반드시 밝히고 있다. 會計上の 方針에 選擇可能性이 있을 경우 각 企業이 어떤 會計方針에 따라 財務諸表가 작성되었느냐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財務諸表를 읽는 讀者에게는 아주 중요하다. 註記(footnotes)에 會計方針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의 位置는 맨먼저 놓는 것이 常例로 되어 있다.

上記한 중요한 會計方針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① 聯結의 基準(consolidation basis)
- ② 在庫資產의 評價(inventory pricing)
- ③ 外國通貨의 換算(translation of foreign currencies)
- ④ 無形資產의 債却(amortization of intangible)
- ⑤ 減價償却의 方法(depreciation method)
- ⑥ 投資의 評價(valuation of investments)
- ⑦ 未支給年金債務 및 退職給與充當金(accrued pension costs and liabilities for severance payments)
- ⑧ 稅效果의 期間配分(interperiod tax allocation)
- ⑨ 收益認識基準(basis of revenue recognition)
- ⑩ 試驗研究 및 開發費(research and development costs)
- ⑪ 1株當利益의 計算方法(earnings per share calculation)

앞서 提示한 1954年末에 報告한 Allegheny Ludlum Industries Inc.의 基本的 財務諸表에 추加적으로 報告되는 Accounting policies와 Notes to financial statements를 例示하면 다음과 같다.

Notes to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December 31, 1975 and 1974

(1) Summary of accounting policies:

Basis of consolidation—The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include the accounts of the Corporation and all subsidiaries except two wholly-owned domestic finance subsidiaries formed in 1975 and immaterial foreign subsidiaries. All material intercompany transactions are eliminated. Investme-

nts in unconsolidated subsidiaries and affiliated companies are carried at cost plus equity in undistributed earnings since acquisition. Condensed financial statements of the principal affiliated company, Titanium Metals Corporation of America, are presented on page xx.

Inventories—Inventories are stated at cost, which is not in excess of market. Cost is determined principally by the "last-in, first-out" method or, in the case of certain inventories, by the average cost method.

Property, plant and equipment—Expenditures for additions and betterments are capitalized while those for maintenance and repairs are expensed as incurred. The cost and accumulated depreciation of assets sold or retired are removed from the respective accounts and any gain or loss reflected in earnings.

Depreciation is based on straight-line rates for financial reporting purposes. However, to maximize cash available to finance the business, accelerated rates are utilized for tax purposes. Replacement items, included with machinery and equipment in the balance sheets, are charged to earnings based on usage.

Intangibles—The cost of business in excess of net assets acquired is amortized over periods ranging from 10 to 40 years.

Retirement plans—Pension expense, including amortization of prior service costs over periods from 25 to 40 years, is determined by independent consulting actuaries. Pension costs are funded as accrued.

Income taxes—Since undistributed earnings of affiliated companies are required for reinvestment, provisions for deferred income taxes on such earnings are not made by the Corporation.

Investment tax credits are applied as a reduction of income taxes currently payable in the year in which the credits are earned.

Earnings per share of common stock—Primary earnings per share are determined on the basis of the weighted average number of shares outstanding and after deduction for dividends on preferred stock.

Fully diluted earnings per share are determined on the basis of those shares included in the primary

earnings per share calculation plus common shares which would have been issued if conversion of the \$3.00 Convertible Preferred Stock and 4% Convertible Subordinated Debentures had taken place at the beginning of each year, together with Common Stock issuable on the exercise of dilutive stock options. Appropriate adjustments are made for dividends, interest and income taxes.

(2) Acquisitions:

On February 28, 1975 the Corporation acquired all of the outstanding common stock of Standard-Thomson Corporation (Standard-Thomson) for cash and notes aggregating \$15,483,000. Standard-Thomson is engaged in the manufacture and sale of thermo-mechanical and electro-mechanical controls and control components. The total purchase price was allocated to the net tangible assets acquired based on their estimated fair values, and included no goodwill. Since this acquisition was accounted for as a purchase, the results of operations of Standard-Thomson have been included in the consolidated statements of earnings from the date of acquisition.

The following table summarizes, on an unaudited pro forma basis, the consolidated results of the Corporation as though Standard-Thomson had been acquired on January 1, 1974:

| | Year ended December 31, | |
|---|----------------------------|--------------|
| | 1975 | 1974 |
| (In thousands, except earnings per share) | | |
| Sales..... | \$ 794,995 | \$ 1,006,952 |
| Net earnings | 29,874 | 46,616 |
| Earnings per share of common stock: | | |
| Primary | 4.98 | 8.47 |
| Fully diluted | 4.32 | 6.75 |

The Corporation also acquired several other domestic businesses during 1975 for cash and notes aggregating \$4,895,000. These transactions have been accounted for as purchases, and the excess of the purchase prices over the net assets acquired of \$830,000 is being amortized over periods ranging from ten to forty years. The results of operations of these businesses are not material to the consolid-

ated financial statements.

(3) Inventories:

The classification of inventories at December 31, 1975 and 1974 follows:

| | <u>1975</u> | <u>1974</u> | |
|--|-------------------|-------------------|--|
| | (In thousands) | | |
| Finished goods..... | \$ 38,182 | \$ 37,162 | |
| Work in process | 150,031 | 164,538 | |
| Raw materials | 88,493 | 104,149 | |
| Supplies | 9,246 | 9,957 | |
| | 285,952 | 315,806 | |
| Less allowance to reduce carrying value to LIFO basis..... | 79,509 | 89,645 | |
| | <u>\$ 206,443</u> | <u>\$ 226,161</u> | |

At December 31, 1975 and 1974, the cost of inventories aggregating \$ 138,000,000 and \$ 161,000,000, respectively, was determined on the last-in, first-out (LIFO) method. Amounts applied to reduce inventories under the LIFO method from cost determined under the average and first-in, first-out methods were \$ 79,509,000 at December 31, 1975, \$ 89,645,000 at December 31, 1974 and \$ 29,165,000 at December 31, 1973. Inventories at December 31 for use in the calculation of costs of goods sold amounted to \$ 206,443,000, \$ 226,161,000 and \$ 185,066,000 for the years 1975, 1974 and 1973, respectively. During 1975, the Corporation reduced certain inventory quantities. This resulted in a liquidation of applicable LIFO inventory quantities carried at lower costs prevailing in prior years. The effect was to increase net earnings by \$ 4,575,000.

(4) Long-term debt:

A Summary of long-term debt at December 31, 1975 and 1974 follows:

| | <u>1975</u> | <u>1974</u> | |
|---|----------------|-------------|--|
| | (In thousands) | | |
| 3 ^{3/4} %-9% notes, payable through 1990..... | \$ 44,654 | \$ 37,700 | |
| Prime rate plus 1 ^{1/2} % notes, payables in 1979 | 30,000 | 30,000 | |
| | 74,654 | 67,700 | |
| 4% Convertible Subordinated Debentures, due through 1981, net of debentures held by the Corporation | 5,703 | 5,703 | |

| | | |
|--|-------------------|-------------------|
| 4 ^{3/4} % Sinking Fund Debentures, due through 1986, net of debentures held by the Corporation..... | 6,300 | 6,440 |
| 9% Sinking Fund Debentures, due 1976 through 1995, net of debentures held by the Corporation | 36,157 | 40,000 |
| 7 ^{1/2} %-7 ^{1/4} % capitalized lease and other obligations, payable through 1998 | 16,885 | 13,372 |
| | <u>\$ 139,699</u> | <u>\$ 133,215</u> |

The amount of long-term debt outstanding at December 31, 1975 maturing in each of the next five years is: 1976—\$ 10,232,000; 1977—\$ 10,947,000; 1978—\$ 9,758,000; 1979—\$ 40,488,000; and 1980—\$ 7,313,000. At December 31, 1975, the Corporation held 4% Convertible Subordinated Debentures and 4^{3/4}% and 9% Sinking Fund Debentures in amounts sufficient to meet the required sinking fund payments for three, one, and two years, respectively.

The 4% Convertible Subordinated Debentures are convertible into shares of Common Stock. At December 31, 1975, the conversion price, which is subject to adjustment, was \$ 52.00 per share, and 109,673 shares of Common Stock were reserved for conversions.

The various Notes and the Indentures under which the Debentures were issued contain provisions restricting the payment of dividends on Common Stock (otherwise than in capital stock). Under the most restrictive of such provisions, \$ 73,244,000 of the consolidated retained earnings at December 31, 1975 was available for the payment of such dividends.

The Notes and Indentures also contain various other restrictions relating to additional indebtedness, maintenance of a specified level of working capital, mortgages and liens and the purchase or redemption of capital stock and subordinated indebtedness.

The capitalized lease and other obligations include indebtedness under lease-purchase agreements; the leased properties have been recorded as assets and the related obligations as long-term indebtedness.

(5) Capital stock:

Following is a description of capital stock at December 31, 1975 and 1974:

| | <u>Shares issued and outstanding</u> | |
|--|--|-------------|
| | <u>1975</u> | <u>1974</u> |
| \$3.00 Convertible Preferred Stock, \$1.00 par value; authorized, 2,200,000 shares | 2,016,971 | 2,016,971 |
| Cumulative Preferred Stock, no par value; authorized, 1,000,000 shares | — | — |
| Common Stock, \$1.00 par value; authorized, 20,000,000 shares | 4,788,761 | 4,788,258 |

Shares of \$3.00 Convertible Preferred Stock may be converted at any time into Common Stock. At December 31, 1975, the conversion rate, which is subject to adjustment, was on a share for share basis. The Corporation may redeem the \$3.00 Convertible Preferred Stock in whole or in part at \$62.00 per share through June 30, 1976, \$61.00 per share during the twelve-month period ending June 30, 1977, and \$60.00 per share thereafter, plus in each case accrued dividends. In the event of voluntary liquidation, the holders of \$3.00 Convertible Preferred Stock are entitled to receive an amount equal to the redemption price then in effect, plus accrued dividends.

At December 31, 1975, 2,426,144 shares of Common Stock were reserved for conversions of \$3.00 Convertible Preferred Stock and 4% Convertible Subordinated Debentures and for outstanding options and the granting of options under the employees' stock option plan.

(6) Stock options:

In April, 1975 the shareholders approved an amendment to the Qualified Stock Option Plan of 1969 establishing a new 1975 Stock Option Plan under which officers and key employees may be granted options to purchase up to 300,000 shares of Common Stock (which does not change the number of shares covered by the 1969 Plan) at prices not less than the fair market value on the date of grant. The 1975 Stock Option Plan provides that qualified and nonqualified stock options and stock appreciation rights may be granted during the period of ten years from

February 4, 1975. Stock appreciation rights, which may be granted in connection with nonqualified stock options, entitle the optionee to elect to receive, without payment to the Corporation, shares of Common Stock having a market value equal to the appreciation on the related nonqualified option in lieu of exercise of the option or, at the election of the Corporation, cash in an equivalent amount.

Qualified options may be exercised within five years and nonqualified options within stated periods not exceeding ten years from the date of grant.

Transactions during 1975 and 1974 follow:

| | <u>Shares under option</u> | <u>Per share Price range</u> |
|----------------------------------|------------------------------------|--------------------------------------|
| Outstanding at December 31, 1973 | 146,500 | \$ 23.88-29.50 |
| Terminated | (8,250) | 28.10 |
| Outstanding at December 31, 1974 | 138,250 | 23.88-29.50 |
| Surrendered or terminated | (138,125) | 22.94-29.50 |
| Granted | 259,750 | 21.88-25.13 |
| Exercised | (500) | 22.94 |
| Outstanding at December 31, 1975 | 259,375 | 21.88-29.50 |

No appreciation rights were granted in 1975. At December 31, 1975, 40,125 shares of Common Stock were reserved for granting additional options under the 1975 Plan.

(7) Research and development:

Research and development expenses amounted to \$7,405,000 and \$6,311,000 in 1975 and 1974, respectively.

(8) Retirement plans:

Substantially all employees of the Corporation and its subsidiaries are covered by noncontributory pension plans. Pension expense for 1975 and 1974 was \$23,863,000 and \$22,135,000, respectively. The actuarially determined value of vested benefits exceeded pension fund assets by \$121,000,000 at December 31, 1975. This excess amount increased significantly in 1975 as a result of improved pension benefits granted under certain plans.

Amendments to pension plans required by the Em-

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of 1974 will not have a material effect on future pension costs.

(9) Income taxes:

Income tax expense for the years 1975 and 1974 include the following:

| 1975 | 1974 |
|------------------------------|------------------|
| (In thousands) | |
| Federal | \$ 12,742 |
| Investment tax credits | (1,945) |
| State | <u>1,914</u> |
| | <u>12,711</u> |
| | <u>\$ 33,393</u> |

Taxes currently payable:

| | | |
|------------------------------|------------------|------------------|
| Federal | \$ 12,742 | \$ 30,208 |
| Investment tax credits | (1,945) | (1,483) |
| State | <u>1,914</u> | <u>4,668</u> |
| | <u>12,711</u> | <u>\$ 33,393</u> |
| Deferred taxes: | | |
| Federal | 3,596 | 2,685 |
| State | <u>522</u> | <u>391</u> |
| | <u>4,118</u> | <u>3,076</u> |
| | <u>\$ 16,829</u> | <u>\$ 36,469</u> |

Deferred taxes relate principally to the excess of depreciation deducted for income tax purposes over the amount provided for financial reporting purposes.

Total income tax expense is less than the amount which would be provided by applying the statutory Federal income tax rate to earnings before income taxes. The principal reasons for such differences and the tax effect of each follows:

| | 1975 | 1974 |
|---|--------------|--------------|
| Statutory tax rate..... | 48.0% | 48.0% |
| Equity in net earnings of affiliated companies | (10.1) | (3.9) |
| Investment tax credits..... | (4.1) | (1.8) |
| State income taxes, less Federal income tax benefit | 2.7 | 3.2 |
| Other | <u>(.6)</u> | <u>(.8)</u> |
| Effective tax rate..... | <u>35.9%</u> | <u>44.7%</u> |

Undistributed earnings of affiliated companies that have been reinvested and on which income taxes have not been provided by the Corporation approximated \$ 26,000,000 at December 31, 1975.

(10) Leases:

Rent expense amounted to \$ 7,456,000 and \$ 6,995,000 in 1975 and 1974, respectively. Minimum rental commitments at December 31, 1975 under noncancelable leases, exclusive of leases capitalized in the balance sheet, expire as follows:

| Year | Real Estate | Transportation Equipment | Other | Total |
|----------------|-------------|--------------------------|----------|----------|
| (In thousands) | | | | |
| 1976 | \$ 1,282 | \$ 1,521 | \$ 1,516 | \$ 4,319 |
| 1977 | 1,244 | 1,382 | 1,355 | 3,981 |
| 1978 | 1,219 | 1,100 | 931 | 3,250 |
| 1979 | 1,099 | 1,247 | 666 | 3,012 |
| 1980 | 836 | 773 | 432 | 2,041 |
| 1981-1985 | 2,334 | 2,318 | 60 | 4,712 |
| 1986-1990 | 1,052 | — | — | 1,052 |
| 1991-1995 | 629 | — | — | 629 |

In the normal course of business, leases that expire are generally renewed or replaced by leases on similar property. Noncapitalized financing leases are not material to the Corporation's operations.

V. 結 言

현대 經濟社會에 있어서 한 나라의 會計實務를 지도하는 會計行爲의 指針으로서 會計原則이란 것이 있다. 會計原則은 한 國家의 會計實務로부터 발달하여 일반적으로 公正妥當하다고 認定되는 것을 要約하여 모든 企業이 준수하여야 할 會計行爲의 指針을 規範화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1958년에 처음으로 企業이 會計行爲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企業會計原則」을 제정하고, 이를 모든 企業이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그동안 우리나라의 企業會計制度를 一定의 水準에까지 發展시키는데 큰貢獻을 하였다. 이와 같이 마련된 「企業會計原則」은 1976년에 부분적인修正을 加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會計原則에 관한 최초의 論議는 일찍이 1930年頃 美國에서 나타난 大恐慌의 결과 投資者를 保護하기 위한 會計情報의 마련하려는 데서 비롯되어, 그후 많은 學者와 研究機關에서 多樣한 意味·內容·性格을 갖는 會計原則을 成案하여 발표한 바 있으며, 오늘날에도 「會計原則」의 本質·內容·體制를 둘러싸고 學者間에 激論을 벌이고 있는 實情에 있다. 우리나라의 「企業會計原則」도 실은 그들이 初期段階에서 발표한 會計原則에 직접·간접으로 影響을 받고 成文化된 것이다.

현행의 우리나라 「企業會計原則」과 우리나라

「企業會計原則」의 母體를 이루었던 美國의 會計原則간에는 經濟與件의 變化와 發展의 速度에 따라 會計原則의 制定當時에 비해 많은 乖離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乖離現象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여의가지 理由로 구분하여 考察할 수 있으나 本研究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점을 中心으로 分析하였다.

첫째로 會計原則을 制定하게 된 經濟社會의 背景을 달리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韓美間의 會計原則의 制定機構를 중심으로 각각의 特徵과 差異點을 분석하였다.

둘째로 相異한 經濟與件과 會計原則制定機構를 전제로 하여 마련된 會計原則을 적용하여 具體的 形式을 갖고 표현되는 것이 財務諸表라는 점에 착안하여, 複雜多岐한 個別의 會計原則을 分析하는 方法을 止揚하고 會計報告書에 나타난 결과를 중심으로 會計原則의 實踐問題를 概括的으로 비교하는 것으로 하였다.

위와 같은 接近方法에 따라 韩美間의 會計原則의 差異를 露呈하게 된 歷史的 背景과 會計原則制定機構의 特徵을 分析한 결과 다음과 같은 基本的 差異點을 발견하였다.

(1) 韩美間 會計原則의 差異는 우선 會計基準을 마련하게 된 經濟社會의 歷史的 背景을 달리하고 있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美國에서 會計原則에 관한 최초의 論議는 1930年代初 大恐慌을 經驗하고 난 이후의 일이다. 물론 그 以前에도 會計行爲에 대한 일정의 規範을 마련코자 하는 일부의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New Deal 政策의 一環으로 投資者를 保護하기 위한 1933年的 證券法과 1934年的 證券去來法이 제정되면서 美議會로부터 證券去來委員會가 會計原則制定의 權限을 부여받으면서 비롯되었다.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企業會計原則」은 1950年に 빌랄한 6.25動亂후 企業의 合理化를 도모하고 外資導入, 企業의 健全化, 租稅의 公正化 등 당시에 山積된 經濟問題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企業會計制度를 확립할 필요성에서 이의 구체적 조치로서 「企業會計原則」의 제정을 보게 된 것이다.

(2) 韩美間의 會計原則은 會計基準을 制定하는

主體 및 會計原則의 性格을 서로 달리하고 있다.

美國에서의 會計原則은 형식적으로는 證券去來委員會가 작성하도록 議會로부터 權限을 賦與 받고 있으나 現在에 이르기까지 그의 權限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 美國에서의 會計原則의 작성은 實質的으로는 實務界에서 수행되고 있는 會計慣習이 權威 있는 機關의 支持를 받아 표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같은 점에서 볼 때 美國의 會計基準은 下意上達의 形式으로 制定되고 또 運營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企業會計原則」은 財務部 산하에 있는 證券審議委員會에서 制定任務를 담당하고 있다. 이곳에서 制定한 「企業會計原則」과 「財務諸表規則」은 美國의 경우와는 달리 先進諸國家에서 발달하여 규범화한 會計原則을 기초로 하여 이를 體系化하는 한편 이를 實務界에서 준수하도록 勸告하고 있다. 이같은 점에서 우리나라의 企業會計原則은 上意下達의 方法으로 運營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上述한 바와 같이 韩美間에는 會計原則에 대한 필요성의 歷史的 背景과 會計原則制定機構의 性格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會計原則의 制定方法과 그 内容에 많은 相違點이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差異는 구체적으로 財務諸表에 表現된다. 韩美間의 財務諸表를 比較하여 볼 때 根本的으로 다음의 몇 가지 點에 差異點이 있다.

(1) 韩美間의 財務諸表는 그 體制를 서로 달리하고 있다. 우선 美國에 있어서의 財務諸表는 基本的 財務諸表로서 損益計算書(剩餘金計算書를 포함), 貸借對照表, 財政狀態變動表와 이를 基本的 財務諸表에 필수적인 要素로서 會計處理方針의 설명서와 財務諸表에 대한 脚註(註記 및 註釋)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財務諸表는 證券法과 證券去來委員會에 제출하는 것과 一般配用으로 작성하는 것과의 사이에 적용하는 會計基準이 實質的 差異點이 없다.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財務諸表는 會計基準을 마련하는 機關에 따라 그 體制와 内容 그리고 적용하는 會計基準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 많다. 財務部에서 마련한 「企業會計原則」에서는 財務諸表로서 貸借對照表, 損益計算書, 利益剩餘金計算書 및 附屬明細書 등 4가지 報告書를 들

고 있다. 이들 財務諸表는 商法에서 要求하고 있는 計算書類와 비교하여 볼 때 그 體制에 있어서나 報告書 작성에 있어서 적용할 會計基準에 實質的인 差異點을 보이고 있는 면이 많다.

(2) 財務諸表를 작성할 때 적용하는 會計基準의 性格上의 差異로 말미암아 韓美間의 財務諸表는 그 內容과 形式을 달리하고 있다. 美國의 會計基準은 근본적으로 慣習으로부터 발달하여一般的으로 公正妥當하다고 認定된 것을 GAAP로 정하고, 이는 거의 모든 會計問題를 취급하는 關係機關에서 공통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입장

에 있어 會計基準이 實質的으로 一元化되어 運營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會計制度의 導入過程에서 關係機關에 따라 다른 입장에서 다른 基準을 적용하여 동일한 經濟活動을 기초로 하고서도 基本的으로 상이한 財務報告書가 마련되는 것이 보통이다. 특히 商法과 財務諸表規則에 따라 작성하는 報告書의 內容에는 實質的으로 많은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이 볼 때 우리나라의 會計基準은 實質的으로 多元的 體制下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